

연구보고 98-1

主要國의 倒産法(I)

獨逸의 倒産法

1998. 5.

研究者 : 崔星根(首席研究員)

한국법제연구원

發刊辭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규모의 대소를 불문한 다수 企業의 倒産으로 인하여, 失業이 날로 증가하고 기업인들의 企業意志가 상실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 企業의 自救勞力에 바탕을 둔 강도높은 構造調整이 전개되고, 다른 한편으로 자생력 또는 경쟁력을 상실한 企業의 退出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간 우리의 경제는 고도성장에만 주력해 온 관계로 경쟁에서 뒤쳐지거나 자생력을 상실하여 도태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法制度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破産制度·和議制度·會社整理制度는 비송사건절차의 하나쯤으로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당연한 귀결로서 도산법제도의 발전이나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날로 확산되는 企業倒産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자금의 상황은 倒産法制度의 역할이 여느 법제도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倒産法制度에 관한 세계 각국의 추세를 보면, 새로이 企業更生制度를 도입하거나 종래의 法制度를 보완하는 등 도산법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제현황과 倒産制度의 운용실상을 감안해 볼 때,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등 선진국들이 경제공황이나 경기침체 또는 EU의 결성이나 WTO의 출범 등에 즈음하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거나 재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倒産法制度의 대폭적인 改正을 추진하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연구원에서는 금년도 연구과제의 하나로 「企業倒産에 관한 法制度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 및 일본의 선진 倒産法制度를 심층연구하고, 하반기에는 현행 도산법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각국 도산법제도의 시사점들에 터잡아 現行 倒産法制度의 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는 그와 같은 일련의 연구작업중 첫번째 보고서로 독일의 倒産法制度를 연구·분석함과 아울러 전문개정된 1994年 倒産法을 번역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본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企業倒産에 관한 法制度 연구」는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倒産法制度의 개정작업에 유용한 立法資料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보고서의 집필에 수고한 研究者와 법령번역작업에 도움을 준 최 문희석사(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의 노고를 치하함과 아울러 關係者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1998년 5월

韓國法制研究院長 徐承完

目 次

第1部 獨逸의 倒産法制	9
第1章 獨逸 倒産法制의 概觀	11
I. 獨逸 倒産法制의 체계	11
II. 獨逸 倒産法制의 특징	11
III. 獨逸 倒産法制의 연혁	13
IV. 1994年 倒産法の 立法背景 및 主要改正事項	14
1. 立法背景	14
2. 主要改正事項	19
第2章 倒産節次 一般 - 破産節次	23
I. 倒産節次開始 前段階에 관한 사항	23
II. 倒産節次の 開始에 관한 사항	23
1. 일원적인 倒産節次の 申請	23
2. 管轄의 집중	23
3. 倒産能力의 확장	24
4. 倒産節次 開始原因의 추가	24
5. 財團不足으로 인한 開始申請의 棄却可能性 축소등	24
6. 保全處分에 관한 상세한 法的 規制 및 臨時倒産管財人의 法的 地位 강화	25
7. 開始節次 중 臨時倒産管財人의 企業繼續의 可能性에 관한 조사	25
III. 倒産節次開始 後段階에 관한 사항	26
1. 規制緩和 및 債權者自治의 강화	26
2. 倒産財團의 範圍 확대	26
3. 倒産債權者의 範圍 확대	26
4. 租稅 및 勤勞者의 優先權 폐지	27
5. 否認權의 강화	27
6. 擔保債權者의 權利 강화	27

IV. 殘餘債務免責	28
第3章 倒産計劃 - 更生節次	31
I. 概要	31
II. 倒産計劃의 作成·提出 및 審理	31
1. 倒産計劃의 作成 및 提出	31
2. 倒産計劃의 拒否	32
3. 倒産計劃에 대한 意見表明	32
4. 換價 및 配當의 中止	32
5. 倒産計劃의 備置	32
III. 倒産計劃의 內容	33
1. 說明部	33
2. 形成部	33
3. 附加事項	34
IV. 倒産計劃에 대한 承認 및 認可	35
1. 倒産計劃에 관한 協議 및 投票期間	35
2. 倒産債權者 및 別除權者의 議決權	35
3. 倒産計劃에 대한 投票	36
4. 倒産計劃의 承認 및 同意	37
5. 倒産計劃의 認可	38
V. 認可받은 倒産計劃의 效力	39
1. 一般的 效力	39
2. 一般的 效力의 例外	39
3. 倒産計劃에 의한 執行	40
4. 倒産節次의 終結 및 그 效力	40
VI. 倒産計劃의 遂行에 대한 監督	41
1. 一般原則	41
2. 倒産管財人의 義務 및 權限	41
3. 後順位 債權者의 等級	42
4. 監督의 公告, 終結 및 費用	42

第4章 自己管理 - 협의의 和議制度	45
I. 概要	45
II. 債務者의 自己管理申請 및 法院의 命令	45
1. 自己管理命令의 要件	45
2. 추후의 自己管理命令	45
III. 自己管理에 대한 監督	46
1. 監督人에 의한 監督	46
2. 債權者委員會 및 債權者集會등에 의한 監督	46
3. 債務者의 義務와 責任	47
IV. 換價 및 辨濟	47
1. 擔保目的物의 換價	47
2. 倒産債權者에 대한 辨濟	47
V. 自己管理에 관한 倒産計劃	48
1. 倒産計劃의 作成 및 倒産計劃 遂行의 監督	48
2. 財團不足	48
3. 債務者의 生計費	48
VI. 自己管理命令의 終結	48
第5章 獨逸 倒産法制의 示唆點	49
I. 標準的 倒産節次로서의 破産節次	49
II. 倒産節次의 一元化	50
III. 債權者의 權限 강화	51
IV. 殘餘債務免責	51
V. 消費者破産制度	52
VI. 派生金融商品에 대한 취급	53
VII. 1994년 倒産法의 문제점	54
第2部 獨逸倒産法 原文翻譯	55

第1部

獨逸의 倒産法制

第 一 章

第 一 章 第 一 节

第1章 獨逸 倒産法制의 概觀

I. 獨逸 倒産法制의 체계

독일은 1994년 도산법(Insolvenzordnung vom 5. Oktober 1994; InsO)의 제정 이전까지 도산법제로 파산법(1887 Konkursordnung)에 의한 파산제도와 화의법(1935 Vergleichsordnung)에 의한 화의제도를 운용하고 있었고, 예외적으로 통독이후 구동독지역에서의 기업도산에 대하여는 독일 통일법제의 일환으로 1990년에 제정된 포괄집행법(Gesamtvollstreckungsordnung)을 적용하고 있었다.¹⁾ 독일에서는 오래전부터 파산법 및 화의법의 개정의 필요성이 부단히 제기되어 왔고 십수년전부터는 본격적인 개정논의가 진행되어 왔다.²⁾ 이러한 장기간의 노력은 1877년의 파산법 성립이후 최대의 변혁이라 할 수 있는 1994년의 도산법 제정에 의하여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되었다. 독일은 1994년 도산법의 제정을 통하여 종래의 파산법과 화의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하고 파산제도와 화의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여기에 새로이 갱생제도를 도입하였다. 1994년 도산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³⁾

II. 獨逸 倒産法制의 특징

도산법제는 로마법상의 파산제도와 이를 보다 발전시킨 이탈리아법상의 파산제도를 계수한 대륙법계와 로마법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형성되어온 영미법계로 대별할 수 있다.⁴⁾ 독일의 도산법제는 로마·이탈리아의 파산제도를

1) '倒産'이란 支給不能·支給停止·債務超過 또는 현저하게 支給이 곤란하다거나 지급정지·지급불능·채무초과의 念慮가 있는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 또는 중대한 경영위기의 상태를 말한다.拙著, "企業更生지원을 위한 法制度에 관한 研究", 韓國開發研究院, 1997.3. 4~7면; 임종헌, "代表的 倒産處理節次인 破産節次の 概觀과 그 活用", 저스티스, 제29권 제1호, 1996.6. 206~207면; 齊藤秀夫·麻上正信, 註解 破産法(改訂第2版), 青林書院, 1994. 6~7면 등 참조.

2) Joachim Kraemer, Das neue Insolvenzrecht, (Bonn: Stollfuß Verlag), 1995, SS. 19~20; ハンス・ブリュッティング, 吉野正三郎·安達榮司 譯, "ドイツ倒産法の改正", ジュリスト No. 1072, 1995. 7. 15, 131~135面 참조, 독일 도산법의 연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3) 1994년 도산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산법시행법(Einführungsgesetz zur Insolvenzordnung vom 5. Oktober 1994; ENInsO)에서 정하고 있다.

4) 도산법제는 파산제도를 근간으로 하는데, 파산제도에 관한 입법주의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대륙법계의 파산제도는 고대 로마시대에 최초로 형성되어 중세 이탈리아에서 발전하였고,

계수하였고, 파산능력을 상인에 한정하지 아니하는 일반파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채무자의 면책이나 기업의 존속보다는 채권자의 만족에 치중하고 있다. 1994년 도산법에서는 대륙법계 도산법제의 전통을 깨고 갱생절차(Insolvenzplan; 도산계획)를 도입하고 채무자의 면책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갱생절차가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은 기업의 유지 또는 원조가 아니라 채권자에게 가능한 한 최대의 만족을 준다는데 있다. 즉, 1994년 도산법도 궁극적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위치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의 적정한 처분을 보장하도록 고안되어 있다.⁵⁾

그후 독일·프랑스등의 파산법으로 이어졌다. 고대 로마에서는 이미 채무자의 전재산을 포괄적 또는 개별적으로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다. 중세 이탈리아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계수하여, 상인의 지급정지를 원인으로 관리인이 그의 총재산을 매각하고 총채권자에게 이를 평등하게 변제하게 하는 파산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 대륙법계 파산제도는 전통적으로 상인에 대해서만 파산능력을 인정하는 상인파산주의, 파산을 예방하기 위한 화의절차를 별개의 독립된 절차로 하는 화의분리주의, 파산절차종료후 배당받지 못한 잔존채무에 대하여 파산자의 책임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비면책주의 및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파산자의 재산범위를 파산선고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고정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파산의 원인을 상인 개인의 책임으로 파악하여 그에게 불이익을 과하는 징벌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다음으로 미국과 영국으로 대표되는 영미법계의 파산제도는 로마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달하였는데, 상인·비상인을 불문하고 파산능력을 인정하는 일반파산주의,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배당받지 못한 잔존채무에 대하여 파산자의 책임면제를 인정하는 면책주의, 파산절차 이전에 파산을 예방하기 위한 화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화의전치주의, 파산선고의 효과를 파산행위시까지 소급하는 소급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징벌주의적 성격보다는 상대적으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도모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파산제도는 대륙법계인 일본의 파산법을 모델로 하여 1962년에 제정된 파산법에 의하여 도입되었는데, 일반파산주의, 화의분리주의, 면책주의, 고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파산법전 자체는 비정계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그 밖의 법령에서는 파산자의 공·사법상의 권리 내지는 자격에 대한 여러가지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정계주의적 색채가 농후하다. 파산제도 이외의 도산법제로는 역시 일본의 화의법과 회사갱생법을 모델로 하여 제정된 화의법(1962년)에 의한 화의제도와 회사정리법(1962년)에 의한 정리제도가 있다.

참고로 일본의 도산법제를 보면, 일본의 구파산법(1890년 제정)은 프랑스법을 모델로 하여 상인파산주의 채택하였고 비상인에 대하여는 家資分散法을 적용하였다. 현행파산법은 1923년에 당시 '제국최고의 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던 독일 파산법(1887년 제정)을 모델로 하여 제정되었고, 같은 해에 당시 가장 최신법이었던 오스트리아의 화의법(1914년 제정)을 모델로 하여 현행화의법이 제정되었다. 2차대전후 미군점령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회사갱생법이 회사갱생계획의 면책효를 규정한 것을 계기로 파산법에서도 파산자의 면책을 인정하게 되었다(1952년), 임중헌, 전계논문, 213~215면 참조.

5) Heiko Fialski, "Insolvency Law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ORPORATE BANKRUPTCY AND REORGANISATION PROCEDURES IN OECD AND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OECD, 1994, p. 29.

Ⅲ. 獨逸 倒産法制의 沿革6)

1877년에 제정된 파산법은 이른바 帝國司法法의 하나이다. 제국사법법은 1870년의 독일제국창설을 계기로 다양한 절차법을 통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공포되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1877년의 파산법은 '제국최고의 법'이라 일컬어졌는데, 1921년에 Theoder Wolff는 "파산법은 현실의 실제적인 필요에 즉응하고 있으며, 파산법과 같은 시기에 제정된 민사소송법까지도 그 생명을 오래가게 하였다"라고까지 극찬한 바 있다.

파산법은 이처럼 폭넓게 인지되고 우수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지만, 시행초기부터 비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1900년 이전에 이미 제국의회에서 파산법개정, 발의가 제출되기도 하였다(1893년 11월 발의). 특히 1929년부터 1931년까지 계속된 세계경제공황은 1877년의 독일파산법이 당시의 난제에 충분히 대처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를 계기로 갱생제도의 필요성이 주장되기 시작하였고, 채권자의 파산자에 대한 부인권 강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파산절차에서의 다양한 우선권의 축소에 관한 의론이 제기되었다. 그 후 1937년 및 1938년에 파산법개정초안이 만들어졌지만, 뒤이어 전시체제로 이어진 정치적 변화의 영향을 받아 입법화되지는 못하였다.

파산법에 관한 비교적 크고 유일한 수정은 1935년 화의법의 제정으로 행하여졌다. 화의법(전신인 1927년 화의법 포함)의 제정에 의하여 도산법제에 갱생제도를 두지 아니한다는 1877년 당시의 입법자의 판단은 수정되었다. 1935년의 화의법에 의하여 파산을 회피하기 위한 배려가 배풀어졌지만, 화의제도가 실제로 적용된 예는 많지 아니하였다. 이는 현재까지의 개략적인 통계로 보아 화의제도가 활용된 예가 전체 도산사건의 1%에도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실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독일에서의 화의절차는 그다지 중요한 도산절차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파산법에 의한 청산에 대하여도 개정의 필요성이 언급되기 시작하였고, 1975년에는 Kilger가 '파산의 파산'이라고 하는 명언을 남기기도 하였다. 파산법의 기능상실은 무엇보다도 상당한 건수의 재단부족에 의한 파산신청기각, 평균적으로 낮은 파산배당을 및 거의 무의미한 상태의 화의절차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6) Joachim Kraemer, a.a.O, SS. 19~20; ハンス・ブリュッティング, 前掲論文, 131~132面.

1950년부터 1970년까지의 기간동안 독일의 파산법이 별다른 개정없이 존속하였던 것은 파산법이 특별히 우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에는 경제가 활황이었고 고도성장율을 구가한 시대였으므로 파산법이 쟁점화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킨 것은 1973년과 1974년의 이른바 오일쇼크로 상징되는 경제의 구조위기였다. 상황의 변화와 함께 파산의 목적도 변화하였다. 파산은 이미 단순한 '경제의 활동정지요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하였고, 파산에 의하여 우량기업이 도태되는 등 부정적 측면이 더욱 부각되었다. Ernst Jager은 파산에 대하여 '가치없는 최악의 것'이라는 혹평을 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 시기부터 사회국가적 사상이 중시되기 시작하였는데, 직장의 유지 기타 국민경제상 존중하여야 할 가치들은 기업의 해체와는 대립되는 것이라는 사고를 갖게 되었고, 채권자의 입장에서 본 파산 본래의 목적 즉, 책임의 구체화에 의하여 채권을 현실화한다는 관점은 점차적으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IV. 1994年 倒産法の 立法背景 및 主要改正事項

1. 立法背景⁷⁾

1) 倒産法專門家委員會

파산법에 대한 집중적이고 포괄적인 비판에 근거하여, 연방사법장관은 1978년에 독립적인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이 때로부터 입법자에 의한 파산법의 공식적인 개혁이 시도되었다. 동위원회의 임무는 효과적이고 현대적이며 동시에 경제에 밀착함과 아울러 사회적으로도 원만한 도산법을 위한 제반의 제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동위원회는 이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작업을 한 후 1982년에 위원회안을 공표하였고, 이 위원회안은 뉘른베르크 제54회 독일법조인대회에서 Zeuner의 보고서 및 K. Schmidt와 Hanau의 평가서에 기초하여 논의되었다.

보고서에서 주장된 주요내용들은 참석자들로부터 찬동을 얻었는데, 특히 기업법 및 노동법의 관점에서 중요한 논점들이 제기되었다. 동위원회는 심의를 마무리하면서 주석을 첨부한 두권의 보고서를 요강의 형태로 발표하였고, 연방사법성이 이를 1985년과 1986년에 간행하였다.

위원회안에서는 후속적으로 행하여질 개정법을 고려하여 이미 몇가지 중요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통일적인 도산법으로 한다는 판단, 비용규칙의 수정에

7) Joachim Kraemer, a.a.O, SS. 20~22; ハンス・ブリュッティング, 前掲論文, 132~135面.

의한 절차개시의 용이화 및 지급불능의 우려라는 도산절차원인의 도입, 종래의 파산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 파산우선권의 삭제에 의한 특권의 축소,⁸⁾ 소규모도산제도의 창설 및 도산방지절차의 불채용등이 그 예이다.

그밖의 위원회의 의견은 뒤이은 개혁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일부만 고려되는 정도에 그쳤다. 먼저 청산절차와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예정된 갱생절차의 목적 및 태양이 그러하다. 갱생절차의 목적은 채무자의 존속 및 갱생인데, 이와 관련하여 동위원회는 종래의 화의법상의 조치(예를 들어, 지급유예와 면제)에 더하여 채무자에 의한 인적·조직적 재편성 및 자본·채무구조의 변경도 가능하도록 의도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갱생절차의 경우 주된 권한이 법원과 도산관재인 그리고 채권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되었다. 즉, 법원은 갱생절차가 적합한가 청산절차가 적합한가를 기본적으로 판단할 의무가 있고, 도산관재인은 갱생계획을 입안할 의무가 있으며, 갱생계획을 수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조별 채권자가 결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었다.

이에 더하여 특히 중요한 두 가지 논점이 있었는데, 동산담보권의 취급과 잔여채무면책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동위원회의 견해가 관철되지 아니하였다. 동산담보권에 관한 위원회의 제안은 도산관재인의 원칙적 환가권한이라고 하는 절차법적 관점과 병행하여 무점유담보권의 경우에 대한 법적 규제를 예정하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담보권의 부분적 축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되었다. 더욱이 동위원회는 담보목적물의 사용에 의한 가치감손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또 재단부터의 이자급부도 담보채권자에게는 부여되지 아니하도록 의도하였으나 관철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잔여채무면책에 관하여 동위원회는 남용을 우려하여 그 도입을 거부하는 한편, 도산절차종료후의 기간에 대한 특별한 집행보호를 권고한 바 있다.

2) 倒産法改正 準備草案 및 參事官草案

독일 도산법제의 개혁은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한 공개적인 중간논의 이후 연방사법부에 의한 도산법 준비초안(1988년 8월, 보충초안 1989년 9월) 및 이와 내용이 거의 동일한 참사관초안(1989년 2월)을 공표하면서 제2단계로 들어갔다. 이들 초안의 특징은 시장적합적인 절차로의 규제완화의 추구이다. 이 점에 관하여는 비교법적 접근방법이 시도되었는데, 특히 미국의 도산법의 제요소가 계

8) 종래 파산법은 조세우선권(제60조)과 파산절차개시전 1년내에 발생한 근로자의 채권의 우선권(제61조1항 a)을 인정하고 있었다.

수되었다. 이와 함께 참사관초안은 법의 경제분석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초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갱생절차로 도산계획(Insolvenzplan)을 도입한 것이다. 도산계획에 의하여 무엇보다도 채권자는 유연한 도산처리를 할 수 있는 무한의 선택여지를 갖게 되었다. 예컨대 영업양도나 신탁적 청산도 동등한 선택적 규제수단으로서 채무자의 기업계속에 의한 갱생과 병존하여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참사관초안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도산절차에서의 사적 자치에 의한 교섭 및 그 진행과정중의 다른 모든 해결책과 비교하여, 적어도 1인의 관계자를 보다 좋은 상태로 만듦과 동시에 그외의 모든 관계자를 보다 나쁜 상태로 만들지 아니하는 해결책은 경제적으로 최선의 상태가 실현되도록 한다(참사관초안 제2부 총론(A) 21면).”

또한 규제완화의 목적에 부응하여 법원과 도산관재인의 비중을 채권자와 비교하여 작게 두었다. 즉, 채권자가 법규정에 의한 표준적 도산절차인 파산절차를 행할 것인가 아니면 도산계획에 의한 절차를 행하는가를 선택하고, 계획입안에 관하여 주도권을 갖도록 하였다. 도산계획에 대한 동의시에 특별히 자유롭게 조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규제완화사상이 표출된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기본원칙의 귀결이라기 보다는 법의 경제분석을 반영한 것으로서 양초안의 방해금지조항(Obstruktionsverbot)이 있다. 방해금지조항은 경제적 효율성에 근거하여 도산계획의 동의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단순다수결원리의 결함을 보완한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도산계획에서의 광범위한 새로운 방향성과 병행하여, 전문가위원회의 의견과 현저하게 다른 것은 특히 동산담보권에 대한 비교적 판단에 대한 취급 및 잔여채무면책에 대한 긍정적 판단이다.

3) 獨逸再統一이 倒産法에 미친 影響

독일 도산법제에 관한 수십년에 걸친 개혁논의에도 불구하고, 또 상술한 바와 같은 전문가위원회 및 입법자에 의한 포괄적인 준비활동에도 불구하고, 1990년 10월 3일의 독일 재통일이 없었다면 아마도 개혁의 시도가 현재와 같은 형태로 종결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1990년 구동독지역에서의 포괄적인 법제개혁은 무엇보다도 도산법 개정작업의 중단을 초래하였다. 종래의 파산법·화의법을 구동독지역에서 계승하도록 하는 방안은 당연히 상정되지 아니하였다. 즉, 이미 개정작업이 상당부분 진행되어 있었으므로 종래의 파산법을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었으며, 그렇다고 해서 1989년의 참사관초안이 곧바로 법률로 확정될 정도에 이르지

는 못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중간적인 해결방법이 취해지게 된 것이다.

당시 구동독(DDR)은 종래의 파산법·화의법을 1975년에 제정된 이른바 포괄 집행규칙으로 대체시키고 있었다. 포괄집행규칙은 불과 18개조에 불과한 것으로 압도적으로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는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도산 절차가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아니함을 시사한다. 특히 직권에 의한 절차개시의 가능성 및 채권자의 채권리의 제한은 포괄집행규칙의 기본이념이 무엇인가를 말해준다. 1975년 포괄집행규칙은 1990년 5월 18일의 '통화·경제·사회단체에 관한 양국간의 조약'에 기초하여 개정되어 과도기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리고 이 규칙은 얼마간 이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독일재통일조약에 의하여 다시 한번 내용이 추가·보충되어 이른바 포괄집행법(Gesamtvollstreckungsordnung)으로 구동독지역에서 시행되었다.

포괄집행법은 극단적으로 짧은 법률이었지만, 도산법 개혁의 중요부분으로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련의 법규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포괄집행법은 제1조제1항제1문에서 민법상 조합의 파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도산법 제15조제1항 참조). 아울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도산관재인에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도산법에서 다시 보여진다(포괄집행법 제28조제1항, 도산법 제174조제1항 참조). 또한 포괄집행법 제13조제1항제2호 a에서는 포괄집행절차의 개시전에 발생한 근로자의 청구권에 관한 규정과 함께 도산절차의 계속중에 해고가 통지되고 이로 인하여 실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급여채권의 일부가 재단채무로 된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도산법 제209조 참조). 끝으로 포괄집행법 제18조제2항제3문은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있는데, 이 규정에서는 독일 도산법제에서는 처음으로 잔여채무면책을 정하고 있다(도산법 제286조 이하 참조).

4) 立法節次의 最終段階

참사관초안에 대한 다각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1991년 11월 준비 초안 및 참사관초안을 약간 수정하여 정부안으로 의회에 제출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로써 독일 도산법제의 개혁은 최종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1) 聯邦議會 法務委員會의 審議過程에서의 政府案의 變更

제출된 정부안은 제1독회후 1992년 6월 3일 법무위원회의 심의에 송부되었다. 동위원회는 정부안에 대하여 1992년 9월 16일부터 1994년 4월 13일까지의 기간동안 모두 7회의 심의회를 개최하였다. 동위원회의 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제2

및 제3독회후 1994년 4월 21일에 연방의회에서 가결된 최종안은 정부안과 기본 입장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최종안은 다수의 조문편찬상의 변경 이외에도 일련의 실질적인 변경 내지는 내용의 보충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산관재인의 경우가 그러한데, 정부안에서는 법인도 도산관재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최종안에서는 이를 삭제하였다. 또한 종래의 법과는 달리 도산관재인의 직무영역이 채권표의 관리에까지 확장되고, 임시도산관재인에게 위임된 채권한의 범위는 기업도산의 경우 기업계속의 전망에 대한 심사에까지 확충되었다. 한편 동산담보채권자의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최종순간까지 논란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일괄적인 권리확정비용부담액의 인하로 결의되었다.

일련의 변경은 도산계획에 의한 절차의 긴축을 의도한 것이었는데, 이에 따라 계획입안제출권도, 또 동의한 경우 채권자집단의 분류의 가능성도 제한되었다. 더욱이 정부초안과 비교하여 채권자집회에서의 논의와 투표는 1기일중으로 통합되었다. 그밖에 방해금지조항의 해당범위에 관하여도 일정한 한계가 설정되었다.

정부안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보충은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전혀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자연인의 도산을 위하여 새로이 고안된 소비자도산 절차이다.

(2) 聯邦參議院의 비판과 兩院協議會로의 委託

1994년 5월 5일의 연방참의원 법무위원회의 권고에 기초하여 1994년 5월 20일 양원협의회가 설치되었다. 諸州 그 중에서도 여기에 참가한 주는 특히 사법에 대한 인원확충의 과대요구와 비용의 폭발적인 증대를 우려하였는데, 이들 주는 새로운 도산법의 시행과 병행하여 인적 부담의 경감을 요구하였다. 연방참의원은 무엇보다도 소비자도산절차를 비판하고, 소비자에 대한 면책을 도산법의 특별법절차 중에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양원협의회는 1994년 5월 26일의 회의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작업반을 설치하여 추후 논의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특별작업반은 1994년 6월 9일에 회의를 개최하여 권고를 준비하고, 양원협의회는 1994년 6월 15일 최종심의후 그 권고를 채택하였다. 이 권고에 따라 도산법시행법을 변경하여 새로운 도산법의 시행일을 1999년 1월 1일로 하였다. 그밖의 사항들에 대하여는 연방참의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3) 立法節次의 終結

1994년 6월 17일 연방의회는 양원협의회의 권고에 동의하고, 연방참의원은 1994년 7월 8일의 본회의에서 이의신청을 포기하였으며, 이로써 새로운 도산법이 1994년 10월 5일에 공포되었다(BGBI. I 2866). 이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도산법이 구서독의 州에서는 파산법 및 화의법을, 구동독지역에서는 포괄집행법을 대신하게 된다.

2. 主要改正事項

1994년 도산법제 대개혁의 목적은, 법안의 서문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종래의 화의제도 및 파산제도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한데 모으고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하는데 있다. 도산법은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를 일단 도산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표준적 도산절차인 파산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도산계획(Insolvenzplan: 갱생절차) 또는 자기관리(Eigenverwaltung: 협의의 화의절차)가 파산절차에 갈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도산법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도산계획이나 자기관리가 선택되더라도 채무자가 더 이상 채권자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절차가 재개되도록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적정한 처분이 보장되도록 고안되어 있다. 즉, 도산법은 도산절차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까지나 '채권자의 최대만족'이고 '기업의 유지 또는 원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양한 개혁목적은 1회에 실현한다는 입법자의 결단의 귀결로서 제정된 1994년 도산법의 주요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倒産節次 一般

(1) 倒産節次開始 前段階에 영향을 미치는 改正事項

1994년 도산법에도 종래의 파산법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도산방지절차는 없다. 다만, 도산법과 도산법시행법에서는 도산절차 이전에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조치들을 두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후술한다.⁹⁾

(2) 倒産節次의 開始에 영향을 미치는 改正事項

도산법은 종래의 파산법과 비교하여 일원적인 도산절차의 신청·관할의 집중·

9) 이 보고서의 23면 '第2章 倒産節次 一般 I. 倒産節次開始 前段階에 관한 사항' 참조.

도산능력의 확장·도산절차의 개시원인 추가등 도산절차개시의 편의성과 신속성 제고, 재단부족으로 인한 개시신청의 기각가능성 축소, 임시도산관재인인의 법적 지위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3) 倒産節次開始 後段階에 영향을 미치는 改正事項

규제완화 및 채권자자치의 강화, 도산재단의 범위 확대 및 부인권의 강화를 통한 재단의 궁핍화의 방지, 우선권 폐지에 의한 배당에 있어서의 불공정성 제거, 도산채권자의 범위 확대 및 담보채권자의 권리 강화, 자연인에 대한 잔여채무면책의 인정등을 들 수 있다.

2) 更生制度의 導入

1994년 도산법 개정의 핵심은 바로 갱생제도인 도산계획의 도입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94년 도산법에서 갱생제도로써 도산계획을 도입하였다는 것은 도산절차의 궁극적인 목적을 채권자의 최대만족에 두고 채무자의 갱생에 대하여는 도의시해 왔던 독일 도산법제에 커다란 획을 긋는 의미를 가진다.

도산계획은 도산법 제217조 내지 제253조에 규정되어 있다. 도산법에서는 도산계획에 관하여 무엇보다도 규제완화와 채권자자치의 강화에 기초를 두고 표준적 도산절차로부터 벗어나 책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도산법은 책임을 구체화하는 방법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도산계획의 상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후술한다.¹⁰⁾

3) 債務者의 自己管理에 관한 特別節次

1994년 도산법은 비용의 절감, 효율성의 제고 및 신속한 절차개시라고 하는 개정취지를 배경으로 하여,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재산의 처분권한을 유지하는 자기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자기관리제도는 파산법과 화의법을 통합하고 도산계획을 도입하면서 종래의 화의제도를 축소·보완한 것으로, 파산절차나 갱생절차(도산계획) 이외에 특별한 도산처리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것이다. 자기관리제도에 관하여는 도산법 제270조 내지 제2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후술한다.¹¹⁾

10) 이 보고서의 31면이하 '第3章 倒産計劃' 참조.

11) 이 보고서의 45면이하 '第4章 自己管理' 참조.

4) 消費者倒産節次

1994년 도산법은 소비자 내지 소규모 사업자의 도산처리에 관하여 통상의 도산절차와는 별개로 채무조정제도와 소규모도산절차의 2단계 법적 절차를 두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도산절차는 경제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거나 경미한 독립적인 경제활동만을 영위하는 자연인에 대한 특별한 도산절차로,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법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이다. 소비자도산절차에 관하여는 도산법 제304조 내지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債務調整計劃

채무조정계획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소규모도산절차의 개시신청과 함께 또는 신청후 지체없이, 적격여부와 도산절차개시의 신청전 6월내에 계획에 기초한 채무조정 에 관한 채권자와의 재판외의 합의가 성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 잔여채무면책을 신청하거나 신청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재산표·채권자표·채권표와 이들 표의 기재사항이 진실하고 완전하다는 의사표시 및 채무조정계획¹²⁾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305조제1항). 이 경우 채권자는 참가의무를 부담하고(제305조제2항), 도산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절차는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동계획에 대한 결정시까지 정지된다(제306조).

채무조정계획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재산표·채권자표·채권표 및 계획을 송달함과 동시에 1월의 기간내에 이들 표와 채무정리계획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제307조). 채권자가 채무정리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른바 방해금지조항인 제309조에 의하여 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고 동의채권자의 채권총액이 이들 채권자 전원의 채권총액의 과반수 이상인 경우, 동계획은 승인된 것으로 보며 도산법원은 이를 결정으로서 확정한다. 확정된 채무정리계획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며, 소규모도산절차개시 및 잔여채무면책의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제308조).

(2) 小規模倒産節次

채무조정계획에 근거한 채무조정이 실패로 끝난 때에는 도산법 제311조 내지 제3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규모도산절차가 진행된다. 이는 통상적인 도산절차와

12) 채무조정계획에는 채권자의 이익 및 채무자의 재산·수입 및 가족관계를 고려하여 채무조정에 적절한 모든 규정이 포함될 수 있으며, 채권자의 보증·질권 및 기타의 담보가 동계획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가의 여부 및 영향의 정도를 정하여야 한다(제305조제1항제4호 후단).

는 달리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되는데, 보고기일을 정하지 아니하고 조사기일만을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명료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절차의 진행도 가능하다(제312조). 이 경우 환가 및 잔여채무면책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가 1인에게 집중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탁자를 지정한다(제313조 및 제292조).

第2章 倒産節次 一般 - 破産節次

독일의 도산법은 표준적인 도산절차(파산절차)에 관하여 우리의 파산법과 마찬가지로 신청, 선고, 재단의 관리·환가, 채권의 신고·조사·확정, 절차의 종료 그리고 잔여채무면책을 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時系列에 따라 도산절차의 개시전단계, 도산절차의개시 및 도산절차의 개시후단계로 구분하여 종래의 파산법과 비교되는 주요개정내용을 중심으로 독일의 파산절차를 검토한다.

I. 倒産節次開始 前段階에 관한 사항

종래의 법과 마찬가지로 도산법에도 일반적인 도산방지절차는 없지만, 도산법은 민법 제419조의 삭제(도산법시행법(EInsO) 제33조제16호), 유한회사의 경우 간소화한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도산법시행법 제48조제4호), 소비자도산절차에서의 재판외의 화해시도의 필요성 명문화(도산법 제305조제1항제1호)등에 의하여 도산절차에 들어오기 전에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을 정하고 있다.

II. 倒産節次の 開始에 관한 사항

1994년 도산법은 제11조 내지 제34조에서 도산절차의 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종래의 파산법과 비교하여 특히 도산절차개시의 편의성과 신속성 제고, 재단부족으로 인한 개시신청의 기각가능성 축소, 임시도산관재인에 권한 강화 및 개시절차중 도산기업의 갱생가능성 조사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1. 일원적인 倒産節次の 申請(제13조)

통일적인 도산절차를 채용한다는 개정취지의 귀결로서 '파산절차를 신청할 것인가 화의절차를 신청할 것인가 아니면 갱생절차를 신청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어려움을 없애고, 일원적으로 도산절차를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재정파탄의 와중에서 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함에 있어 최적의 절차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2. 管轄의 집중(제2조)

도산절차의 수행을 위한 재판관할을 주지방법원 소재지역내의 구법원으로 집중

시켰다. 또한 주정부는 적절한 필요에 응하거나 절차의 보다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법규명령으로 또는 주사법부에 위임하여 다른 구법원이나 추가의 구법원을 도산법원으로 정할 수 있다.

3. 倒産能力의 확장(제11조)

도산법은 자연인과 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격없는 사단(nicht rechtsfähige Verein)에까지 도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종래의 파산법과 비교하여 도산능력의 중대한 확장을 의미하는데, 이로써 독일법상의 법인격없는 회사(Gesellschaft ohne Rechtspersönlichkeit) 즉, 합명회사, 합자회사, 민법상의 회사, 선박공유 및 유럽의 경제적 이익결합체도 법인과 동일하게 도산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4. 倒産節次 開始原因의 추가(제18조)

종래의 파산법에서는 지급불능과 지급불능으로 추정되는 지급정지 그리고 법인의 경우 여기에 추가하여 채무초과를 도산절차의 개시원인으로 인정하였으나(제17조), 1994년 도산법은 여기에 '지불불능의 우려'를 추가하였다. 다만, '지급불능의 우려'가 개시원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채무자가 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5. 財團不足으로 인한 開始申請의 棄却可能性 축소등

종래에는 재단부족을 이유로 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배당하여 채권자의 균등한 만족을 충족시킨다는 파산절차의 존재의의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었다.¹³⁾ 1994년 도산법은 제26조에서 종래의 파산법 제107조에서와 마찬가지로 파산절차의 개시신청의 기각여부를 도산절차비용과 결부시키고 있지만(제26조제1항), 제54조에서 절차비

13) 종래의 파산법에 의하면 파산절차는 재단부족을 이유로 절차의 개시가 불가능하게 되거나(제107조) 절차 자체가 정지되었다(제204조 참조). 절차가 정지되는 경우는 차치하더라도, 파산절차를 신청한 사건의 4분의 3이상이 재단부족을 이유로 기각되었다고 한다. Statistisches Jahrbuch 1985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s. 134; 이상영, "독일파산법상의 경쟁절차의 채택", 비교사법, 1997 상반기, 104면 재인용: 1950년에는 파산신청사건의 27.03%, 1960년에는 35.22%, 1970년에는 47.22% 그리고 1980년에는 73.29%가 재단부족을 이유로 기각되었다.

용을 도산절차에 관한 재판상의 비용과 임시도산관재인·도산관재인·채권자위원회 위원의 보수 및 채당금 즉, 종래의 파산법 제58조제1호 및 제2호의 재단비용으로 한정하여 재단부족으로 인한 도산절차 개시신청의 기각가능성을 대폭 줄이고 있다.

또한 1994년 도산법은 신속한 도산절차의 개시를 위하여 새로운 자금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재단부족으로 인한 개시신청의 기각을 피하기 위하여 도산절차비용을 채당하는 경우 도산절차개시 신청의무자에게 채당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6조제3항).

6. 保全處分에 관한 상세한 法的 規制 및 臨時倒産管財人の 法的 地位 강화

종래와 비교하여 1994년 도산법은 보전처분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1994년 도산법은 보전처분과 관련하여 종래의 임시파산관재인이나 가압류 물건보관인 대신에 임시도산관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제21조제2항제1호). 이러한 임시도산관재인의 법적 지위는 도산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일반적 처분금지를 명하는가 명하지 아니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일반적 처분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임시도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관리·처분권을 행사하지만(제22조제1항), 채무자에게 일반적 처분금지를 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따로 임시도산관재인의 의무를 정한다(제22조제2항). 이와 관련하여 주목하여야 할 조항이 제55조제2항인데, 이 조항에서는 종래의 독일연방법원의 판례와는 달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가진 임시도산관재인이 도산절차개시후에 부담한 채무를 재단채무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도산법시행법 제20조제4호에 의하여 새로이 강제경매법 제30조 d 제4항이 추가되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임시도산관재인은 일정요건하에 채무자의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를 일시정지하도록 할 수 있다.

7. 開始節次중 臨時倒産管財人の 企業繼續의 可能性에 관한 조사

1994년 도산법에 의하면 도산법원은 임시도산관재인에게 전문가로서 기업계속의 가능성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데(제22조제1항제3호), 이는 갱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개시절차중에 이에 상응하는 방침

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고려에 의한 것이다.

Ⅲ. 倒産節次開始 後段階에 관한 사항

도산법의 도산절차개시후의 단계에 관한 주요개정사항은 재단의 궁핍화의 완화, 배당에 있어서의 불공정성 제거, 규제완화·채권자자치의 강화에 의한 효율성의 제고 및 자연인을 위한 잔여채무면책권의 부여 등이다.

1. 規制緩和 및 債權者自治의 강화

1994년 도산법은 소비자도산절차 이외의 영역에 관하여는 책임을 구체화하는 방법을 정함에 있어 선택의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열어 놓고 있다. 이미 채무자가 도산계획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집회가 법규정에 의한 표준적인 도산절차에 대신하여 도산계획이 입안되어야 하는가의 여부를 보고기일에 결정한다. 더욱이 기업도산의 경우에는 채권자집회가 보고기일에 채무자의 기업의 폐지 또는 계속 여부를 결정하고, 도산관재인에게 도산계획의 완성을 위임할 수 있으며, 그 후에 판단을 변경할 수도 있다(제157조).

2. 倒産財團의 範圍 확대

1994년 도산법에 의하면 도산절차개시시의 채무자소유의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절차진행중 취득한 재산도 도산재단에 포함된다(제35조). 이 규정은 자연인의 잔여채무면책과 관련하여 파산법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3. 倒産債權者의 範圍 확대

1994년 도산법은 제39조에서 종래의 파산법 제63조, 화의법 제29조 및 유한회사법 제32조 a 제1항제1문에서 배제되고 있던 채권¹⁴⁾을 도산절차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채권의 소지자는 단지 후순위 도산채권자의 지위를 얻는데 지나지 아니한다. 즉, 이들 채권자에 대한 지급은 다른 모든 채권자가 완전한 만족을 얻은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4) 1994년 도산법은 제39조에서 도산절차개시후에 발생한 도산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이자, 각 도산채권자의 도산절차참가비용, 벌금·과료·과태료·과징금·금전지급의무가 있는 가별적 행위 또는 질서위반행위의 부가형, 채무자의 무상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및 사원의 代價的 소비대차로 인한 채권 또는 이와 동등한 채권을 후순위 도산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4. 租稅 및 勤勞者의 優先權 폐지

1994년 도산법은 분배상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종래의 파산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우선권과 제61조1항 a에 의한 파산절차개시전 1년내에 발생한 근로자의 채권의 우선권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근로자는 도산법시행법 제93조 제6호에 의하여 신설된 고용촉진법(Arbeitsförderungsgesetz) 제141조 b에 의하여 파산절차개시전 3월간에 대하여는 노동관청에 도산결손금(Insovenzausfallgeld)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도산법은 제123조제2항에서 사회계획(Sozialplan)상의 근로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재단채무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으로 근로자는 그 지위가 종래의 파산법에 비하여 현저하게 강화되고 우선권의 폐지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졌지만, 반면에 재단부족으로 인한 파산절차 정지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5. 否認權의 강화

1994년 도산법은 파산재단의 충실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인권력을 강화하고 있다(도산법 제129조 내지 제147조). 즉, 도산법에서는 종래의 파산법과 비교하여 부인권행사의 주관적 요건이 완전히 삭제되거나 완화되어 있다. 이 중 완화된 부분은 본래 정부초안에서 정하고 있던 내용을 법무위원회가 부분적으로 후퇴시킨 것이라고 한다. 특히 도산법은 제130조제3항 및 제131조제2항에서 파산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 또는 변제행위의 취소와 관련하여 행위시 채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던 자(제138조 참조)는 지급불능 또는 개시신청의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다.

6. 擔保債權者의 權利 강화

1994년 도산법은 담보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광범위한 정보청구권(제167조 및 제168조)의 부여, 보고기일후의 이자청구권의 인정(제169조) 및 채권자위원회에 대한 관여권의 강화(제67조 등) 등이다.

먼저 1994년 도산법은 담보채권자에게 광범위한 정보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파산관재인은 점유하고 있는 별채권있는 동산을 경매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가하는 경우(제166조제1항 참조) 별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상태에 대하여 통지하거나 목적물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청구권의 보전을 위하

여 양도한 채권을 압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환가하는 경우(제166조제1항 참조), 별채권자에게 그 채권에 대하여 통지하거나 통지에 대신하여 채무자의 장부 및 영업서류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위의 환가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도산관재인은 사전에 별채권자에게 매각방법을 통지함과 아울러 1주일 내에 1주일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다 유리한 환가방법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별채권자가 환가방법을 제시한 경우, 도산관재인은 그 환가방법을 조사하고 별채권자에게 환가방법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1994년 도산법은 환가전의 채권자보호 차원에서 이자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도산관재인은 환가할 권한이 있는 목적물을 환가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채권자에게 도산재단으로부터 보고기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채권자가 도산절차개시전에 이미 법원의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환가를 방해받은 경우에는 그 보전처분후 3월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끝으로 종래의 파산법은 제1회 채권자집회전에 도산법원이 채권자집회를 구성하는 경우 단순히 채권자 또는 채권자대표자 중에서 채권자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위원회의 구성여부와 선임된 위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었다(파산법 제87조). 그러나 1994년 도산법은 제1회 채권자집회전에 도산법원이 채권자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별채권자·채권액이 가장 많은 도산채권자·소액채권자 및 근로자대표를 구성원으로 하고,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위원회의 구성여부와 선임된 위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별채권자 즉, 담보채권자의 채권자위원회에의 관여권을 강화하고 있다.

IV. 殘餘債務免責

종래의 파산법에 의하면 자연인은 파산절차의 종결 후에도 미지급채무에 대하여 유책한 것으로 남는다.

지급능력이 없는 자연인에 관한 도산법의 가장 중요한 개정사항은 동법 제286조 내지 제303조에서 정하고 있는 잔여채무면책의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의 파산법에 의할 경우 확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는 사후청구권에 근거하여(파산법 제164조제1항) 30년간(민법 제218조제1항), 그리고 그 기간중에 강제집행을 시도한다면 그 이상의 기간에 있어서도(민법 제209조제2항제5호) 채무자에게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도산법이 이러한 반영구적인 지급의무의 내용을 수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포괄집행법에서 이미 시도되고 있는 집행보호조치나 채무자재산에 대한 파산적·강제

적 환가에 의해서만 면책이 허용되는 미국법과 차이가 있다.¹⁵⁾ 즉, 도산법에서는 성실한 채무자가 도산절차의 종료후 7년에 걸쳐 자기의 수입중의 압류가능한 부분을 수탁자에 양도하고, 이 수탁자가 안분적으로 도산채권자를 만족시킬 것을 면책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제287조제2항, 제290조제1항제3호 및 제292조제2항).

15) ハンス・プリュッティング, 前掲論文, 138面.

第3章 倒産計劃 - 更生節次

I. 概要

갱생제도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 효시가 되는 것은 미국의 도산법제에서 채용하고 있는 기업구조재편(Reorganization)이다. 근래 들어 각국에서는 경제공황이나 경기침체 또는 WTO의 출범이나 EU의 결성등 커다란 경제흐름의 변화에 대응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거나 채도약의 새로운 발판을 만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갱생제도를 도입하여 왔다.¹⁶⁾ 독일의 경우 1994년 도산법에서 갱생제도로써 도산계획(Insolvenzplan)을 도입한 것은 도산절차의 궁극적인 목적을 채권자의 최대만족에 두고 채무자의 갱생에 대하여는 도외시해 왔던 독일 도산법제의 기본적인 틀을 바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산계획은 종래의 강제화회의와 임의화회의의 상당부분을 수용하면서 '계획(Plan)'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형식으로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권리의무관계를 융통성있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기업을 정상화시켜서 그 수익으로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갱생계획일 수도 있고, 기업을 제3자에게 이전하여 그 제3자가 기업의 수익으로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수계획일 수도 있고, 파산재단의 청산 및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관한 합의에 한정하는 청산계획일 수도 있고 또 그밖에 경영혁신이라든가 기업내부의 인사조치 또는 부서조정등 일부 경영에 관한 계획일 수도 있다.

II. 倒産計劃의 作成·提出 및 審理

1. 倒産計劃의 作成 및 提出(제218조)

도산계획은 채무자와 도산관재인이 최후기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채무자는 도산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도산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도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가 도산계획의 완성을 위임한 경우 적절한 기간내에 그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산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채권자위원회, 경영협의회, 주요 근로자대표위원회 및 채무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6) 독일의 기업갱생절차 도입은 물론 그간의 개정논의가 누적되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평면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WTO가 출범이후 무한경쟁시대에 들어서면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의도와 향후 EU의 완전통합을 염두에 두고 주도권을 선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지 않은 동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倒産計劃의 拒否(제231조)

도산법원은 도산계획의 제출권 및 내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계획제출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거나 치유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가 도산계획을 제출함에 있어 채권자의 승인을 받거나 법원의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출한 도산계획의 형성부에서 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인정된 청구권의 실현이 명백하게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산계획을 거부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승인 또는 법원의 인가가 없거나 협의기간의 공고 후 철회한 도산계획을 채무자가 도산절차의 진행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도산관재인은 채권자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도산법원에 거부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도 같다. 이 경우 거부결정에 대하여는 제출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

3. 倒産計劃에 대한 意見表明(제232조)

도산법원은 도산계획이 거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위원회·경영협의회·주요근로자대표위원회 및 도산관재인이 제출한 경우 채무자 그리고 채무자가 제출한 경우 도산관재인에게 의견표명을 위하여 도산계획을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도산법원은 산업, 상업, 수공업, 농업 기타 전문분야에서 채무자에게 소속된 직무상 대리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표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4. 換價 및 配當의 中止(제233조)

도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의 속행으로 인하여 도산계획의 수행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산법원은 채무자 또는 도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환가 및 배당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중지로 인하여 도산재단에 중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거나 도산관재인이 채권자위원회 또는 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 환가 및 배당의 속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중지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취소한다.

5. 倒産計劃의 備置(제234조)

도산계획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그 부가사항 및 도산계획에 대한 의견표명과 함께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Ⅲ. 倒産計劃의 內容

도산계획은 說明部(darstellender Teil)와 形成部(gestaltender Teil)로 구성되고 여기에 附加事項(Anlage)이 첨부되어야 한다(제219조, 제229조 및 제230조).

1. 說明部(제220조)

설명부에서는 이해관계인의 권리형성의 원칙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산절차개시시까지 취할 조치 및 도산절차개시후 취할 조치를 기술한다. 설명부에는 채권자가 계획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이 계획을 인가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도산계획의 원칙 및 효력에 관한 부가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形成部(제221조)

형성부에서는 계획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법적 지위를 변경시키는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1) 集團의 區分(제222조)

도산계획에 의하여 권리가 침해되는 별채권자, 후순위가 아닌 도산채권자 또는 후순위 도산채권자등 서로 상이한 법적 지위를 가진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도산계획에서는 각각의 권리의 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상당한 채권을 가지고 도산채권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집단을 구성하여야 하고, 소액채권자에 대하여도 별도의 집단을 구성할 수 있다.

2) 別除權(제223조)

도산계획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별채권자의 권리는 도산계획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도산계획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형성부에서 별채권자에 대한 배당률의 삭감정도, 지급유예기간 또는 기타의 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3) 倒産債權者의 權利(제224조)

도산계획의 형성부에서는 후순위가 아닌 채권자에 대한 배당률의 삭감정도, 지급유예기간, 권리보전방법 또는 기타의 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4) 後順位 倒産債權者의 權利(제225조)

후순위 도산채권자의 채권은 도산계획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면책된 것으로 보며, 도산계획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형성부에서 후순위 도산채권자의 각 집단에 대한 배당률의 삭감정도, 지급유예기간, 권리보전방법 또는 기타의 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산절차 종료후의 채무자의 벌금등(제39조제1항제3호 참조)에 대한 책임은 도산계획에서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5) 利害關係人에 대한 동등한 取扱(제226조)

각 집단의 모든 채권자는 동등한 취급을 받으며, 특정집단의 채권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은 도산계획에 모든 관련채권자의 동의를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도산관재인·채무자 또는 기타의 자와 개별채권자간의 약정 또는 집단내의 투표에 의하거나 도산절차와 관련하여 개별채권자에게 도산계획에 정함이 없는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는 경우 그 약정등은 무효이다.

6) 債務者의 責任(제227조)

도산계획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형성부에서 정한 대로 도산채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밖의 채무로부터 면책되고, 이러한 면책은 채무자가 법인격없는 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인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7) 物權關係의 變動(제228조)

도산계획의 형성부에서는 목적물상의 권리의 성립, 변경, 양도 또는 포기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다(토지등기법 제28조등 참조).

3. 附加事項

1) 財産概要 및 收益·財政計劃(제229조)

채권자가 채무자 기타 제3자의 계속기업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도산계획에 재산 및 도산계획의 효력발생시에 직면하게 되는 채무의 가액이 제시되는 재산개요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기간동안 예상되는 지출·수익의 정도 및 기업의 지급능력을 보증하는 수입과 지출의 연속정도를 설명하여야 한다.

2) 기타의 表示事項(제230조)

도산계획에서 채무자의 기업의 속행을 정하고 있고 채무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도산계획에 의거하여 기업을 속행할 것이라는 채무자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한다. 채무자가 법인격없는 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인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도산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또한 채권자가 법인 또는 법인격없는 사단이나 법인격없는 회사의 지분·사원권 또는 출자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의 의사가 도산계획에 표시되어야 하고, 제3자가 도산계획의 인가를 위하여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의사표시가 도산계획에 표시되어야 한다.

IV. 倒産計劃에 대한 承認 및 認可

1. 倒産計劃에 관한 協議 및 投票期間 (제235조 및 제236조)

도산법원은 도산계획과 채권자의 의결권에 관한 협의기간과 후속계획에 관한 투표기간을 1월이내로 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시에는 도산계획과 이해관계인의 의견표명의 내용을 법원에서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채권을 신고한 도산채권자, 별제권자, 도산관재인, 채무자, 경영협의회 및 주요근로자대표위원회에 대하여는 이를 별도로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시에는 도산계획의 사본 또는 주요내용에 관한 요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협의 및 투표기간은 병합할 수 있지만, 채권조사기간보다 선행할 수 없다.

2. 倒産債權者 및 別除權者의 議決權

1) 倒産債權者의 議決權(제237조)

도산계획의 투표에 관한 도산채권자의 의결권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의 의결권에 관한 규정(제77조제1항제1문, 제2항 및 제3항제1호 참조)을 준용한다. 도산계획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채권자는 의결권이 없다.

2) 別除權者의 議決權(제238조)

도산계획에서 별제권자의 법적 지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기간내에 각 별

채권자의 권리가 협의되어야 한다. 별채권자는 채무자가 인적 채무도 동시에 부담하고 있고 별채권에 의한 변제를 포기하거나 결손이 확정 또는 추정되는 경우(제237조제1항제2문 및 제3문), 도산관재인·다른 별채권자 또는 도산채권자로부터 이익이 제기되자 아니하는 때에만 의결권을 가진다. 이익이 제기된 채권,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기한미도래채권의 의결권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의 의결권에 관한 규정(제41조, 제77조제2항 및 제3항제1호)을 준용한다. 도산계획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별채권자는 의결권이 없다.

3) 議決權目錄(제239조)

법원은 협의 및 투표기간내의 협의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의결권을 표로 작성한다.

3. 倒産計劃에 대한 投票

1) 集團別 投票(제243조)

의결권있는 채권자의 각 집단은 도산계획에 관하여 별도로 투표할 수 있다.

2) 倒産計劃의 變更(제240조)

도산계획의 제출자는 전술한 기간내의 협의에 근거하여 도산계획의 개별규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도산계획에 대하여는 동기간내에 투표할 수 있다.

3) 別途의 投票期間

도산법원은 협의기간과 1월이하의 간격을 두어 별도의 투표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의결권있는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투표기간을 송달하여야 하고 도산계획의 변경시에는 특히 그 변경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제241조).

4) 書面投票(제242조)

별도의 투표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산법원은 협의기간후 의결권있는 채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고 동시에 의결권이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는 투표기간전일까지 도달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고, 투표용지의 발송시 이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4. 倒産計劃의 承認 및 同意

1) 過半數要件(제244조)

도산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투표에 참가한 채권자의 과반수가 찬성하고 찬성 채권자의 채권총액이 투표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권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 채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수개의 채권이 도산절차개시의 효력발생시까지 1개의 채권으로 된 채권자는 1인의 채권자로 계산하고, 담보물권이나 용익물권이 존재하는 채권도 동일하다.

2) 議事進行妨害의 禁止(제245조)

도산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과반수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투표집단의 채권자가 도산계획에 의하여 불리한 지위에 처하지 아니하고 도산계획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부여되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이 있으며 투표집단의 과반수가 각각의 과반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투표집단의 채권총액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가진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도산계획이 없다면 당해 투표집단의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변제받을 채권자·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이해관계인이 도산계획에 의하여 경제적 이익을 갖지 아니하며, 도산계획이 없다면 당해 투표집단의 채권자와 동순위로 변제받을 채권자 중 누구도 도산계획에 의하여 당해 투표집단의 채권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놓이지 아니하는 경우 경제적 이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後順位 倒産債權者의 同意(제246조)

도산절차개시후에 발생한 도산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이자채권 또는 각 도산채권자의 도산절차참가비용채권이 도산계획에서 면제되거나 도산계획에 후순위 도산채권자에 대한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및 이미 도산채권자의 주요채권이 도산계획에 의하여 일부 변제된 경우에는 후순위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제39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25조제1항 참조). 또한 도산계획에 의하여 벌금·과료·과태료·과징금등의 채권을 보유한 집단의 채권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놓이는 도산채권자가 없는 경우(제39조제1항제3호 참조) 및 어느 집단의 채권자도 투표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후순위 도산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4) 債務者의 同意(제247조)

채무자가 투표기간내에 서면 또는 법원의 조서에 의하여 도산계획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동의는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가 도산계획이 없는 경우보다 불리한 지위에 처하지 아니하고 어떤 채권자도 자신의 채권 총액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고려되지 아니한다.

5. 倒産計劃의 認可

1) 法院의 認可(제248조)

도산계획은 채권자의 승인 및 채무자의 동의가 있을 후 도산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산법원은 인가결정전에 도산관재인, 채권자위원회 및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도산계획의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253조).

2) 倒産計劃의 不認可

(1) 條件附倒産計劃(제249조)

도산법원은 도산계획이 인가전에 일정한 급부의 제공 또는 기타 조치의 실현을 조건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들 조건이 충족된 때에만 도산계획을 인가한다. 도산법원은 조건이 일정한 시기를 경과한 후에도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산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한다.

(2) 節次規定의 違反(제250조)

도산계획의 내용과 절차상의 취급에 관한 규정 및 채권자의 승인과 채무자의 동의에 관한 규정이 실질적으로 준수되지 아니하고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거나 특정채권자를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한 경우등 도산계획의 승인이 부정한 경우에는 도산계획이 승인되지 아니한다.

(3) 少數者保護를 위한 不認可(제251조)

도산법원은 채권자가 신청에 의하여 투표기간내에 서면 또는 법원의 조서로 도산계획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도산계획에 의하여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되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도산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倒産計劃認可의 公告(제252조)

도산계획의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은 투표기간내 또는 그 기간 이후의 특별기간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도산계획이 인가된 경우에는 채권을 신고한 채권자 및 별채권자에게 인가사실을 고지하면서 동계획의 사본 또는 중요내용을 발송하여야 한다.

4) 不服(제253조)

채권자와 채무자는 도산계획의 인가결정 또는 불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V. 認可받은 倒産計劃의 效力

1. 一般的 效力(제254조)

도산계획의 인가에 의하여 도산계획의 형성부에 기재된 내용은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미친다. 이러한 효력은 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도산채권자 및 도산계획에 이의를 제기한 이해관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도산채권자의 공동채무자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 및 도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목적물에 대한 권리 또는 그 목적물에 대한 가등기에 기인하는 권리는 도산계획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자의 공동채무자·보증인 및 기타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도산채권자에 대한 것과 동일하게 면책된다. 또한 채권자는 도산계획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변제받은 경우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一般的 效力의 例外

1) 復活條項(제255조)

도산계획의 형성부에 근거하여 도산채권자의 채권이 지급유예되거나 일부면제되는 경우, 채무자가 도산계획을 수행함에 있어 현저하게 이행을 지체하는 때에는 그 유예나 면제는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 경우 채권자가 서면에 의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2주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지체가 된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도산계획의 수행이 완결되기 전에 새로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지급유예나

면제는 모든 도산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異議가 제기된 債權 및 缺損債權에 대한 取扱(제256조)

채권조사기간내에 이의가 제기된 채권 및 별채권자의 결손금의 최고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산법원의 결정에 상응하는 정도로 이들 채권을 고려하였다면 전술한 이행지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가 임시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결손금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한편으로 채무자가 결손금을 과소하게 지급하였다는 것이 최종확정되면 채무자는 부족분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채권자가 서면으로 최고하고 2주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부족분을 추후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지체가 된다. 다른 한편으로 채무자가 결손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는 것이 최종확정되면 채무자는 초과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그 초과지급액이 도산계획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기한미도래채권의 채권액도 초과한 경우에 한한다.

3. 倒産計劃에 의한 執行(제257조)

채무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확정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는 채권표상의 기재와 인가를 받은 도산계획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또한 제3자가 조건없이 채무자와 함께 도산계획을 수행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법원에 표시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자의 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부활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최고사실과 유예기간의 경과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4. 倒産節次의 終結 및 그 效力

1) 倒産節次의 終結(제258조)

도산법원은 도산계획의 인가가 확정력을 갖는 즉시 도산절차의 종결을 결정하고, 이를 채무자, 도산관재인 및 채권자위원회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공고하여야 한다. 도산관재인은 종결전에 이의없는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이의있는 재단채권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倒産節次終結의 效力(제259조)

도산관재인 및 채권자위원회 위원의 직무는 도산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종료하고, 채무자는 도산재단의 처분에 맡겨졌던 권리를 반환받는다. 다만, 도산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도산계획수행의 감독에 관한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도산관재인은 도산계획의 형성부에 정함이 있는 경우, 도산의 취소를 목적으로 계류중인 소송을 도산절차의 종결후에도 채무자의 계산으로 속행할 수 있다.

VI. 倒産計劃의 遂行에 대한 監督

1. 一般原則(제260조)

도산계획의 형성부에서 도산계획수행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에 의거하여 도산절차종결후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권의 이행여부를 감독하고, 도산절차개시후 채무자의 기업 또는 사업을 인수하거나 속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법인격없는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경우 그 채권의 이행여부도 감독할 수 있다.

2. 倒産管財人の 義務 및 權限(제261조)

1) 倒産管財人の 監督權 및 報告義務

도산관재인은 도산계획의 이행여부를 감독하고, 도산관재인과 채권자위원회 위원의 직무 및 법원의 감독권은 그 범위내에서 존속한다. 도산관재인은 감독기간동안 채권자위원회와 도산법원에 대하여 도산계획의 이행상황 및 기타의 전망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고, 채권자위원회 및 도산법원은 언제든지 개별정보 및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倒産管財人の 通知義務(제262조)

도산관재인은 채권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이행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채권자위원회 및 도산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채권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산계획의 형성부에 의거하여 채무자나 인수기업에 대하여 청구권을 가진 모든 채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倒産管財人の 同意가 필요한 法律行爲(제263조)

채무자 또는 인수기업의 특정한 법률행위는 감독기간동안 도산관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것을 도산계획의 형성부에서 정할 수 있다.

3. 後順位 債權者의 等級

1) 信用의 범위(제264조)

도산계획의 형성부에서는 채무자 또는 인수기업이 감독기간동안 차용하거나 재단채권자가 감독기간내에 재단으로의 유입을 허락한 소비대차 및 기타의 신용에 의한 도산채권자의 채권은 도산계획개요에 기재된 재단목적물의 가액이내에서 총액을 확정하여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할 것을 정할 수 있다. 한편 전술한 후순위 채권자와 신용범위내에서 기본채권, 이자 및 비용을 감안하여 신용의 최고액을 합의하고 그 합의를 도산관재인이 문서로 승인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자는 이들 후순위 채권자에 우선한다.

2) 新債權者의 後順位(제265조)

감독기간동안 성립한 기타 계약상의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는 전술한 신용채권을 가진 채권자보다 후순위이다. 감독기간전에 성립한 계속적 채권관계에 의한 청구권은 감독기간동안 성립한 청구권으로 본다.

3) 後順位에 대한 考慮(제266조)

도산채권자와 전술한 신채권자의 후순위는 감독종결전에 개시된 도산절차에 있어서만 고려된다. 새로운 도산절차에 있어서는 이들 채권자가 여타의 후순위 채권자에 우선한다.

4. 監督의 公告, 終結 및 費用

1) 監督의 公告(제267조)

도산계획수행의 감독은 도산절차의 종결결과와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고에는 인수기업에 대한 감독의 확장, 도산관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의 종류 및 신용의 최고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監督의 終結(제268조)

도산법원은 감독의 대상인 청구권이 이행되거나 동청구권의 이행을 위하여 담보가 제공된 경우 또는 도산절차종결후 3년이 경과하고 새로운 도산절차개시의 신청이 없는 경우 감독의 종결을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監督費用(제269조)

도산계획수행여부에 대한 감독비용은 채무자 또는 인수기업이 부담한다.

第4章 自己管理 - 협의의 和議節次

I. 概要

1994년 도산법은 종래의 파산법과 화의법을 통합하고 갱생절차(도산계획)를 도입하면서 종래의 임의화의와 강제화의의 상당부분을 도산계획에 편입시키고, 그 나머지를 보완하여 자기관리(Eigenverwaltung)라는 명칭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채무의 내용을 조정하고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재산의 관리·처분권한을 유지하는 본래 의미의 화의를 유지하고 있다.

자기관리의 경우 채무자는 화의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산을 처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즉, 자기관리에서는 일상적인 기업업무는 채무자에 의하여 수행되고, 감독인은 채무자의 업무를 감시하고 경영을 지원하며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의 조사등 자기관리가 아니라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도산관재인에게 유보되었을 직무를 수행한다.

II. 債務者의 自己管理 申請 및 法院의 命令

1. 自己管理命令의 要件(제270조)

채무자의 자기관리신청이 있고 채권자가 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함에 있어 채무자의 자기관리신청에 동의하였으며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명령이 도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채권자를 불리하게 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산법원은 도산절차의 개시를 결정함에 있어 채무자가 도산관재인에 대신하는 도산절차수행감독인의 감독하에 도산재단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자기관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산채권자는 채권을 감독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산법원은 자기관리를 명하는 경우 도산절차개시의 결정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273조).

2. 추후의 自己管理命令(제271조)

도산법원은 채무자의 자기관리신청을 기각한 경우라도 최초의 채권자집회가 자기관리를 제안한 때에는 도산관재인을 감독인으로 하여 자기관리를 명한다.

Ⅲ. 自己管理에 대한 監督

1. 監督人에 의한 監督

1) 監督人의 法的 地位(제274조)

감독인의 선임, 감독인에 대한 법원의 감독, 감독인의 보수 및 책임에 대하여는 도산관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54조제2호, 제56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 내지 제65조 참조). 감독인은 채무자의 재정상태를 조사하고 영업 및 생계지출을 감독한다(제22조제3항 참조). 감독인은 자기관리의 속행이 채권자에게 해가 된다고 예상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도산법원 및 채권자위원회 또는 채권자·별채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監督人의 協力(제275조)

통상의 업무수행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부담은 감독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통상의 업무수행에 해당하는 채무부담도 감독인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또한 감독인은 채무자에게 모든 금전을 자신만이 수령하고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債權者委員會 및 債權者集會 등에 의한 監督

1) 債權者委員會에 의한 協力(제276조)

채무자가 도산절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법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채권자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債權者集會 등에 의한 協力(제277조)

도산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의 일정한 법률행위는 감독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것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동의필요성에 관한 법원의 명령은 채권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절박하게 필요함을 소명하는 경우 별채권자 또는 도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법원은 동의필요성을 명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債務者의 義務와 責任

1) 雙務契約(제279조)

법률행위의 이행 및 경영협의회의 동의·협력에 관한 규정은 채무자가 도산관재인을 대신하는 경우 자기관리에 준용하고(제103조 내지 제128조 참조), 채무자는 이들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신의 권리를 감독인과 협의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2) 責任의 追窮 및 否認權(제280조)

도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감소로 인한 도산채권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및 사원의 무한책임은 감독인만이 이를 주장할 수 있고(제92조 및 제93조 참조), 감독인은 도산관재인의 부인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법적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제129조 내지 제147조 참조).

3) 債權者에 대한 報告등(제281조)

채무자는 재단목적물표·채권자표 및 재산개요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독인은 이들 표 및 재산개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보고기간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감독인은 보고서 입장을 표명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는 계산의 의무가 있고(제66조 및 제155조 참조), 최후의 계산에 대하여는 감독인이 이를 조사하여 이의제기 여부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IV. 換價 및 辨濟

1. 擔保目的物의 換價(제282조)

자기관리에 있어서는 별채권이 존재하는 목적물에 대한 도산관재인의 환가권이 채무자에게 귀속되고, 채무자는 감독인과 협의하여 환가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적물 및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비용은 증액되지 아니하고, 환가의 실제소요비용 및 양도소득세만이 환가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2. 倒産債權者에 대한 辨濟(제283조)

채무자 및 감독인은 채권조사시에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

고, 도산채권자·채무자 및 감독인이 이의를 제기한 채권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배당은 채무자가 직접 이를 행하는데, 감독인은 배당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의제기 여부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V. 自己管理에 관한 倒産計劃

1. 倒産計劃의 作成 및 倒産計劃 遂行의 監督(제284조)

채권자집회는 감독인 또는 채무자에게 도산계획의 작성을 위임할 수 있다. 채무자가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감독인과 협력하여야 하고, 감독인은 도산계획수행을 감독한다.

2. 財團不足(제285조)

감독인은 재단부족사실을 도산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3. 債務者의 生計費(제278조)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자연인이 아닌 경우 대표권있는 무한책임사원은 자신과 부양가족을 위하여 기존의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필수적인 생계비를 도산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제100조제2항제2문 참조).

VI. 自己管理命令의 終結

도산법원은 채권자집회가 신청한 경우, 별채권자나 도산채권자가 신청하고 자기관리명령이 도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채권자를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자기관리명령을 종결한다. 한편 채권자는 자기관리명령이 도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채권자를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만 자기관리명령의 종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도산법원은 동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자기관리명령이 종결된 경우 종래의 감독인을 도산관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제272조). 도산법원은 도산절차개시의 결정후 자기관리명령의 종결을 결정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273조).

第5章 獨逸 倒産法制의 示唆點

독일의 도산법제는 최근까지 채권자의 최대만족을 중요시하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독일에서는 전통적으로 갱생보다는 파산을 통한 청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파산에 있어서 담보채권은 거의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며, 도산채권자로서의 정부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왔다.

독일은 1994년 도산법을 통하여 갱생제도·잔여채무면책 및 소비자도산절차를 도입하는 등 비로소 현대적 의미의 도산법제의 틀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독일의 도산법제는 일응 여타의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발전단계가 상당히 지체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역으로 그 때까지의 각국 도산법제의 정비추이와 시행착오를 목도한 다음 도산법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단행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1994년 도산법은 도산법제의 단일화와 도산절차의 일원화, 갱생제도·잔여채무면책 및 소비자파산제도의 도입, 채권자자치의 강화, 파산재단의 확대, 배당방법의 개선, 근로자의 법적 지위 변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독일의 도산법제는 채권자의 최대만족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대륙법계의 틀에 갱생제도등 영미법계의 제도를 도입·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도산법제와 유사한 입법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독일의 1994년 도산법의 내용 중 향후 우리의 도산법제를 정비함에 있어 참고될 사항들을 검토한다.

I. 標準的 倒産節次로서의 破産節次

1. 독일의 도산법은 연방, 주 및 주의 감독을 받는 공법상의 법인으로서 주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인, 법인 및 법인격없는 사단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도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제11조 및 제12조). 도산절차의 일반개시원인으로 지급불능과 지급정지를 정하고 있고, 채무자가 개시를 신청하는 경우 지급불능의 우려 그리고 법인의 경우 채무초과를 개시원인으로 추가하고 있다(제16조 내지 제19조). 도산절차는 표준적 도산절차인 파산절차가 기본이 되고, 갱생절차(도산계획)나 화의절차(자기관리)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일정시기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제218조 및 제270조 참조).

2. 도산기업의 퇴출은 전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다수관계자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이므로, 도산제도의 틀내에서 실효성과 형평성이 확보되는

가운데 도모되어야 한다. 도산제도 중 파산은 채무의 완제가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마련한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채무를 정리하여, 최소한의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면서 사태를 수습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산기업의 퇴출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아니하다.

여기에는 현행 파산제도의 경직성에 더하여 채무자의 파산선고에 앞선 잔여재산의 도피경향, 과다한 비용과 기간의 장기소요, 법원이 주관하는 파산절차에 대한 불신, 도산기업에 대한 관권의 비정상적인 개입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도산제도는 기본적으로 파산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운용되어야 하며, 화의제도와 회사정리제도는 이를 보완 또는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II. 倒産節次의 一元化

1. 독일의 도산법은 도산절차의 개시를 일원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갱생절차(도산계획)나 화의절차(자기관리)를 이용하려면 표준적인 도산절차(파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후 또는 신청과 동시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일정시기까지 이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제218조 및 제270조 참조).

도산계획이 인가되면 도산절차는 종결되고(제258조 및 제259조), 인가되지 아니하면 도산절차가 속행된다. 또한 자기관리명령이 결정되면 도산절차는 중지되고, 자기관리명령이 기각되면 도산절차는 그대로 속행된다(제271조제1문 참조). 한편 자기관리명령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집회 또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거나 별채권자 또는 도산채권자가 신청하고 자기관리명령이 도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채권자를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관리가 종결되고 도산절차가 속행된다(제272조 참조).

2. 최근들어 우리나라에서 도산법제의 단일화에 대한 주장이 공론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도산절차 자체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즉, 도산에 처한 채무자로 하여금 도산절차의 개시를 일원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물질적으로 궁핍한 채무자가 도산상태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최적의 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절차를 일원화하려면 한편으로는 청산을 예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갱생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조화시켜야 한다. 즉, 일반집행절차에 따라 청산하

여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거나 도산상태에 처한 기업을 재건하여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절차가 상호활용의 가능성을 보유한 채 일원적인 절차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¹⁷⁾

Ⅲ. 債權者의 權限 強化

1. 독일의 도산법은 특히 도산계획의 도입과 관련하여 채권자자치를 강화하고 있다. 도산법은 도산계획에 있어서 채권자집회가 법정관리인을 선임하고 채무자의 구체적인 책임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도산계획의 실행에 관하여 법정관리인과 채권자집회의 위원이 파산법원과 동일한 감독권한 및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산법원은 법정관리인이 관리업무를 특정함과 동시에 이를 해태하였을 경우 채권자들의 요구가 있으면 법정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해임근거조항을 두고 있고, 법원과 채권자의 적극적인 관여를 허용하여 경영전반에 걸친 철저한 업무감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 우리의 회사정리제도에 있어서는 법원, 법정관리인 또는 관리위원회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채권자의 권한은 요식행위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물론 파산절차의 경우에는 채권의 순위와 금액에 따른 강제적인 환가·배당이 주된 내용임으로 법원과 파산관재인이 절차를 주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갱생절차에 있어서는 갱생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보다 폭넓은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채권자의 경영간섭권을 포함한 채권자자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독일 도산법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Ⅳ. 殘餘債務免責

1. 종래의 독일 파산법에 있어서는 자연인은 파산절차의 종결 후에도 미지급채무에 대하여 유책한 것으로 남았다. 즉, 종래의 파산법에 의할 경우 확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는 사후청구권에 근거하여(파산법 제164조제1항) 30년간(민법 제218조제1항), 그리고 그 기간중에 강제집행을 시도한다면 그 이상의 기

17) 도산절차를 일원화함에 있어서는 특히 갱생절차가 갱생의 가망이 없어 청산하여야 할 경우 채권자의 법적 지위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고, 청산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갱생절차를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Wolfram Henckel, Die Verbindungen des Sanierungsverfahrens zum Konkursverfahren, ZIP, 1981, s. 1296; 이상영, 전제논문, 33면, 재인용.

간에 있어서도(민법 제209조제2항제5호) 채무자에게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1994년 도산법은 지급능력이 없는 자연인에 대하여 이러한 반영구적인 지급의 무의 내용을 수정하여 잔여채무면책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는데, 성실한 채무자가 도산절차의 종료후 7년에 걸쳐 자기의 수입중의 압류가능한 부분을 수탁자에 양도하고, 이 수탁자가 안분적으로 도산채권자를 만족시키도록 하고 있다(제287조제2항, 제290조제1항제3호 및 제292조제2항).

2. 우리의 파산법에서도 잔여채무의 면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면책의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는 있지만 일단 면책이 결정되면 일부 예외적인 채권을 제외하고는 향후 일체의 파산채권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채권자에 대한 장래적 보상측면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물론 잔여채무면책은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장래적 보상측면이 배제된다면 면책결정과 관련하여 미처 만족을 얻지 못한 채권자들의 반발이 적지 아닐 것이고 법원의 입장에서도 면책결정의 폭을 보다 좁힐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잔여채무면책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적정한 활용을 기하려면, 채무자의 최저생활이 유지되도록 하면서 장래의 일정기간동안은 만족을 얻지 못한 채권자에 대한 부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또 이것이 우리의 법감정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V. 消費者破産制度

1. 독일의 도산법은 경제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거나 경미한 독립적인 경제활동만을 영위하는 자연인의 도산처리에 관하여,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법원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통상의 도산절차와는 별개로 채무조정제도와 소규모도산절차의 2단계 법적 절차를 두고 있다.

먼저 채무자는 소규모도산절차의 개시신청과 함께 또는 신청후 지체없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채무조정계획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참가의 무가 있고, 소규모도산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절차는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동계획에 대한 결정시까지 정지된다. 채무조정계획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관련자료를 송달하고 채무정리계획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것을 최고하도록 한다. 채권자가 채무정리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방해금지조항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면 도산법원은 결정으로서 채무정리

계획을 확정하는데, 이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

다음으로 채무조정계획에 근거한 채무조정이 실패로 끝난 때에는 소규모도산절차가 진행된다. 이는 통상적인 도산절차와는 달리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되는데, 보고기일을 정하지 아니하고 조사기일만을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명료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절차의 진행도 가능하다. 이 경우 환가 및 잔여채무 면책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가 1인에게 집중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탁자를 지정한다.

2. 우리의 경우 파산법에 소파산제도를 두고는 있지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일부 절차의 적용배제만을 정하고 있는 협의의 소파산제도에 국한하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온 소비자신용제도와 현재의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맞물려 향후 소비자파산의 확대가 불가피한 우리의 경제실정하에서는, 특히 소비자채무자의 채무정리 및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법제도의 후견적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는 현행 소파산제도의 보완이 불가피한데, 독일의 소비자파산제도가 그 모델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VI. 派生金融商品에 대한 取扱

1. 독일 도산법은 시장 또는 거래소의 시세있는 일반상품 또는 금융상품의 급부에 관하여 확정된 시기 또는 기간내에 확실하게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도산절차개시후에 그 시기 또는 기간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상품의 급부행위가 계약위반의 경우 전체적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한 개괄적 계약의 내용으로 들어 있는 때에는, 쌍무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급부이행의 동시성이 적용된다.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합의된 가액과 변제일에 정해진 장소에서의 도산절차개시후 2번째 평일의 시장가격 또는 거래소시세간의 차이에 의하고 상대방은 이 채권을 도산채권자로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선물, 옵션, 스왑등 파생금융상품거래의 경우 일방당사자가 도산절차에 들어간 때에는 쌍무계약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관리인에게 그 거래의 이행여부의 선택을 맡기는 것은 도산재단의 가치가 부당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¹⁸⁾ 그러므로 정기거래 또는 금융상품거래

18) 다만,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물·옵션과 같은 '거래소를 통한 거래'의 경우와 스왑·선도거래(forward trading) 등과 같은 거래소를 통하지 아니하는

에 관하여는 관리인의 이행선택권을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취급이 필요한데, 이에 관하여는 독일 도산법의 정기거래 또는 금융상품거래에 관한 규정이 입법에 참고가 될 것이다.

VII. 1994년 倒産法の 문제점

독일 도산법의 문제는 1회의 대개정을 통하여 그간에 누적되어온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해결한다는 입법자의 의도에 의하여 다양하고 동시에 성격이 다른 도산절차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성공여부의 기대전망에 관해서는 견해가 상당히 나누어지고 있다. 또한 실무계에서는 장래 도산법의 운용과 관련하여 법관 및 사법보조원의 대폭적인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諸州에 있어서는 새롭게 다수의 법관을 증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잔여채무면책이나 소비자도산절차와 같이 다수의 인원을 요하는 중요한 신규정은 특히 인적 용량을 결한다는 이유에서 실무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도 향후 우리의 도산법제를 재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거래의 경우를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거래소를 통한 거래'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각종 증거금제도 등 거래의 이행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중복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第2部

獨逸倒産法 原文翻譯

倒産法

(Insolvenzordnung vom 5. October 1994)

目次

第1編 總則(제1조~제10조)	59
第2編 倒産節次의 開始, 倒産財團 및 倒産節次關係者(제11조~제79조)	60
第1章 開始要件 및 開始節次(제11조~제34조)	60
第2章 倒産財團, 債權者의 分類(제35조~제55조)	66
第3章 倒産管財人, 債權者의 機關(제56조~제79조)	68
第3編 倒産節次開始의 效力(제80조~제147조)	72
第1章 一般的 效力(제80조~제102조)	72
第2章 法律行爲의 履行, 經營協議會의 協力(제103조~제128조)	76
第3章 否認權(제129조~제147조)	83
第4編 倒産財團의 管理 및 換價(제148조~제173조)	86
第1章 倒産財團의 保全(제148조~제155조)	86
第2章 換價(제156조~제164조)	88
第3章 別除權의 目的物(제165조~제173조)	90
第5編 倒産債權者에 대한 辨濟, 倒産節次의 廢止(제174조~제216조)	91
第1章 債權의 確定(제174조~제186조)	91
第2章 配當(제187조~제206조)	93
第3章 倒産節次의 廢止(제207조~제216조)	97
第6編 倒産計劃(제217조~제269조)	99
第1章 倒産計劃의 作成(제217조~제234조)	99
第2章 倒産計劃에 대한 同意 및 認可(제235조~제253조)	102
第3章 認可된 倒産計劃의 效力, 計劃遂行에 대한 監督(제254조~제269조) ..	105

第7編 自己管理(제270조~제285조)	109
第8編 殘餘債務免責(제286조~제303조)	111
第9編 消費者倒産節次 및 기타 小規模倒産節次(제304조~제314조)	116
第1章 適用範圍(제304조)	116
第2章 債務의 調整(제305조~제310조)	116
第3章 小規模倒産節次(제311조~제314조)	118
第10編 特別한 種類의 倒産節次(제315조~제334조)	119
第1章 相續財産에 대한 倒産節次(제315조~제331조)	119
第2章 繼續的 財産共同制의 合有財産에 대한 倒産節次(제332조)	122
第3章 財産共同制의 共同管理 合有財産에 대한 倒産節次 (제333조~제334조)	122
第11編 施行(제335조)	123

第1編 總則

제1조 (도산절차의 목적) 도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하거나 도산계획에서 특히 기업의 유지를 위하여 다른 정함을 둠으로써 채무자를 공통적으로 만족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면책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2조 (도산법원으로서의 區法院) ①주지방법원 소재지역내의 區法院이 주지방법원 관할지역의 도산절차의 관할권을 가진다.

②주정부는 적절한 필요에 응하거나 절차의 보다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법규명령으로 다른 구법원이나 추가의 구법원을 도산법원으로 정하고 도산법원의 관할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주정부는 그 권한을 주사법부에 위임할 수 있다.

제3조 (장소적 관할권) ①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산법원이 장소적 관할권을 가진다. 채무자의 독립적인 경제활동의 중심지가 다른 장소에 있는 경우 그 다른 장소의 소재지의 도산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②둘 이상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 경우에는 최초로 도산절차개시신청을 접수한 법원이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

제4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절차원칙) ①도산법원은 도산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모든 정황을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증인을 심문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법원의 결정은 구두변론없이 행할 수 있다.

③표와 목록은 기계적인 방법으로 산출·작성할 수 있다.

제6조 (즉시항고) ①도산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즉시항고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불복할 수 있다.

②즉시항고기간은 결정의 통지시 또는 통지가 없는 때에는 결정의 송달시로부터 기산한다. 도산법원은 즉시항고를 배제할 수 있다.

③항고에 대한 주지방법원의 판결은 비로소 확정력있는 효력을 가진다. 단, 주지방법원은 즉각적인 효력의 발생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재항고) ①주고등법원은 주지방법원의 판결이 법률에 위반되고 판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결정에 대한 재심사가 요청되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재항고를 허가한다.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법률위반심사를 위한 재항고의 제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50조, 제551조 및 제5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주고등법원은 도산법의 법률문제에 관한 재항고사건의 결정시 다른 주고등법원의 재항고사건의 결정과 상이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 당해 사건에 관한 연방법원의 견

해를 구하는 제청을 하여야 한다. 주고등법원이 동일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이미 내려진 연방법원의 결정과 상이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같다. 제청결정에는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고, 재항고를 제기한 자의 의견표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③한 주내에 다수의 고등법원이 있는 경우 도산사건에 관한 소송의 집중이 판례의 통일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한, 주정부는 법규명령으로 도산사건에 관한 재항고의 결정을 어느 한 고등법원 또는 주대법원에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송달) ①송달은 직권으로 행한다. 송달은 우편의 발송으로 할 수 있다. 송달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인증은 요하지 아니한다.

②현재의 거소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송달하지 아니한다. 그 자로부터 송달을 수령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③도산법원은 도산관재인에게 송달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공고) ①공고는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공보에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하고, 특히 채무자의 주소 및 영업의 종류가 명시되어야 한다. 공고는 공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2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도산법원은 공보에의 게재재 또는 반복게재를 명할 수 있다.

③공고는 이 법에서 공고와 함께 특별한 송달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모든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을 입증하는 목적으로 충분하다.

제10조 (채무자의 심문) ①이 법에서 채무자의 심문을 명하는 경우 채무자가 국외에 체류하여 심문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심문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대리인 또는 친족을 심문한다.

②채무자가 자연인이 아닌 경우 제1항은 채무자의 대리인 또는 그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문에 적용한다.

第2編 倒産節次의 開始. 倒産財團 및 倒産節次關係者

第1章 開始要件 및 開始節次

제11조 (도산능력) ①모든 자연인 및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법인격 없는 사단은 도산절차의 개시에 있어서 법인과 동일하게 본다.

②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도 도산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1. 법인격없는 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 민법상의 회사, 선박공유 및 유럽의 경제

적 이익결합체)의 재산

2. 이 법 제315조 내지 제334조에서 규정하는 상속재산, 계속적 부부재산공동제의 합유재산 또는 부부재산공동제의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합유재산

③법인 또는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회사가 해산한 후에도 잔여재산분배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산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제12조 (공법상 법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도산절차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1. 연방 또는 주

2. 주의 감독을 받는 공법상 법인으로서 주법이 정하고 있는 경우

②주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의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도산절차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경우, 공법상의 법인이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가 된 때에는 그 법인의 근로자는 주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고용촉진법의 도산결손금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노동관청에 청구할 수 있었을 급부 및 양로연금의개선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보험의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었을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개시신청) ①도산절차는 신청에 의해서만 개시된다. 신청권자는 채권자와 채무자이다

②신청은 도산절차의 개시전 또는 신청이 확정적으로 기각되기 전까지 이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채권자에 의한 신청) ①채권자의 신청은 도산절차의 개시에 관하여 법적 이해관계가 있고 채권의 존재 및 개시원인을 소명하는 경우 허용한다.

②신청을 허용하는 경우 도산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15조 (법인 및 법인격없는 회사의 신청권) ①법인 또는 법인격없는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자 이외에 각 대표기관구성원, 법인격없는 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및 청산인이 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②대표기관구성원의 전원, 무한책임사원의 전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신청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도산절차의 개시원인을 소명하여야 한다. 도산법원은 신청을 하지 아니한 나머지 대표기관구성원, 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③법인격없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자연인이 아닌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원의 조직상의 대리인 및 청산인에게도 적용된다. 회사의 결합이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되는 경우에도 같다.

제16조 (개시원인) 도산절차를 개시하기 위하여는 개시원인이 있어야 한다.

제17조 (지급불능) ①보통의 개시원인은 지급불능이다.

②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한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지급불능으로 추정한다.

제18조 (지급불능의 우려) ①채무자가 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불능의 우려도 개시원인이 된다.

②지급불능의 우려란 채무자가 변제기에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회사의 대표기관구성원의 전원, 무한책임사원의 전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신청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신청인이 동법인 또는 법인격없는 회사의 대표권을 가진 경우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제19조 (채무초과) ①법인의 경우에는 채무초과도 개시원인이 된다.

②채무초과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현재의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채무자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기업계속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기업의 계속도 고려하여야 한다.

③법인격없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자연인이 아닌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무한책임사원이 다른 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개시절차에 있어서의 보고의무) 신청을 허용하는 경우 채무자는 결정을 위하여 모든 정보를 도산법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제97조, 제98조, 제101조제1항제1문·제2문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보전처분) ①도산법원은 도산절차개시의 결정시까지 채권자에게 불리한 채무자의 재산상태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행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시도산관재인 선임. 임시도산관재인에 대하여는 제56조, 제58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채무자에게 일반적 처분행위를 금하거나 임시도산관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분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
3.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하거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

③도산법원은 다른 처분에 의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한 경우 채무자를 강제로 소환하여 심문후 구금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자연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이를 적용한다. 구금명령에 대하여는 제9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임시대산관재인의 법적 지위) ①임시대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무자에게 일반적 처분행위의 금지조치가 취해진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은 임시도산관재인이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임시도산관재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채무자의 재산의 보전 및 관리행위
2. 채무자인 기업의 도산절차개시의 결정시까지의 운영. 단, 채무자의 재산의 상당한 감소를 피하기 위하여 도산법원이 휴업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채무자의 재산이 도산절차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조사. 법원은 임시도산관재인에게 전문가로서 개시원인이 존재하는가의 여부 및 채무자의 기업의 계속과 관련하여 그 전망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조사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②채무자의 일반적 처분행위에 대한 금지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고 임시도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법원이 임시도산관재인의 의무를 정한다. 그 의무는 제1항제2문의 규정에서 정하는 의무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③임시대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영업소에 출입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채무자는 임시도산관재인의 장부 및 영업서류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7조, 제98조, 제101조제1항제1문·제2문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처분행위제한명령등의 공고) ①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행위의 제한을 명하는 결정 및 임시도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한 결정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들 결정은 채무자, 채무자의 채무자 및 임시도산관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하여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하여 급부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채무자가 상업등기부, 협동조합등기부 또는 사단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경우 도산법원은 결정의 정본을 등기법원에 송달하여야 한다.

③처분행위의 제한을 부동산등기부, 선박등기부, 건조중인 선박의 등기부 및 항공기저당등기부에 등기함에 있어서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처분행위제한의 효력) ①제21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처분행위금지의 위반에 대하여는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임시대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가진 경우 계속중인 소송의 수계에 대하여는 제85조제1항 및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보전처분의 중지) ①법원의 보전처분이 중지된 경우 그 처분중지의 공고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임시대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가진 경우, 퇴임 이전에 자신이 관리하는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현재까지의 비용을 지급하고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임시도산관재인이 자신이 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청구한 때에는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제26조 (재단부족으로 인한 기각) ①도산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이 도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산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한다. 단, 충분한 금액이 채당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산법원은 재단부족으로 인하여 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를 채무자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의 채무자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말소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제1항제2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자는 회사법의 규정에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책임있는 사유로 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의무위반 및 책임의 존재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부정하는 자가 부담한다.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제27조 (도산절차개시의 결정) ①도산법원은 도산절차의 개시를 결정하는 경우 도산관재인을 임명한다. 이 경우 제270조 및 제313조제1항의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개시결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1. 채무자의 상호 또는 성명, 영업의 종류 또는 종사업무 및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주소
2. 도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3. 개시의 時期

③개시의 時期가 정해지지 아니한 때에는 개시결정일의 정오를 개시의 時期로 한다.

제28조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한 명령) ①개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채권자에 대하여 제174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일정기간내에 도산관재인에게 채권을 신고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주이상 3월이하로 한다.

②개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채권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담보권을 도산관재인에게 통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 통지에는 담보권의 객체, 종류, 성립이유 및 피담보채권을 표시하여야 한다. 책임있는 사유로 신고를 해태하거나 지체한 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감수한다.

③개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개시의 결정 이후에는 채무자가 아니라 도산관재인에게 변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29조 (기간의 결정) ①도산법원은 도산절차의 개시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의 채권자집회의 기간을 정한다.

1. 도산관재인의 보고에 기초하여 도산절차의 사항에 관하여 결의하는 채권자집회의 기간(보고기간). 보고기간은 6주를 초과할 수 없고 개시결정일로부터 3월을 경과하여 정할 수 없다.
2. 채권자집회가 신고된 채권을 조사하는 기간(조사기간). 채권신고기간의 만료일과 채권조사기간의 사이에는 1주이상 2월이하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②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은 이를 병합할 수 있다.

제30조 (개시결정의 공고 및 잔여채무의 면책에 관한 언급) ①도산법원은 개시의 결정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는 제9조의 규정과는 별도로 요약하여 연방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개시결정은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의 채무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④채무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도산절차의 개시시 제286조 내지 제3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채무의 면책을 신청할 수 있음을 언급하여야 한다.

제31조 (상업등기, 협동조합등기 및 사단등기) 채무자가 상업등기부, 협동조합등기부 또는 사단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경우 도산법원은 등기법원에 다음 각호 1에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개시결정의 정보
2. 재단부족으로 인하여 개시신청이 기각된 경우 기각결정의 정보. 단, 채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격없는 회사인 경우에는 재단부족으로 인한 기각결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 한한다.

제32조 (토지등기부) ①토지등기부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산절차의 개시를 등기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
2. 토지 및 등기된 권리상에 존재하는 채무자의 등기된 권리. 단, 권리의 종류 및 상태에 비추어 등기하지 아니하면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②도산법원은 알고 있는 제1항의 토지 또는 권리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등기공무원에게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도산관재인도 등기공무원에게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절차의 개시가 등기되는 토지 또는 권리가 도산관재인의 관리로부터 벗어나거나 양도되는 경우, 도산법원은 직권으로 등기공무원에게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도산관재인도 등기공무원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3조 (선박등기부 및 항공기등기부) 제32조의 규정은 도산절차의 개시를 선박등기부, 건조중인 선박의 등기부 및 항공기저당등기부에 등기함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기된 선박, 건조중인 선박 및 항공기는 제32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으로, 등기법원은 등기공무원으로 본다.

제34조 (상소) ①도산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신청자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③도산법원은 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력을 갖는 경우 즉시 절차의 폐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에 대하여는 제200조제2항제2문 및 제3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도산관재인의 능동적 법적 행위 및 수동적 법적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2章 倒産財團. 債權者の分類

제35조 (도산재단의 정의) 도산절차는 도산절차개시시의 채무자소유의 재산 또는 채무자가 도산절차진행 중 취득한 전재산에 미친다(도산재단).

제36조 (압류할 수 없는 물건) ①강제집행할 수 없는 목적물은 도산재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은 도산재단에 포함된다.

1. 채무자의 상업장부. 이 경우 서류보관에 관한 법정 의무는 그대로 존속한다.
2. 민사소송법 제811조제4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는 물건
- ③관습상 가계에 속하고 채무자의 가사에 사용하는 물건은 이를 환가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이 극히 소액에 불과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도산재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7조 (부부재산공동제에 있어서의 합유재산) ①부부재산공동제에 있어서의 합유재산이 일방배우자에 의하여 단독으로 관리되는 경우 그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때에는 그 합유재산도 도산재단에 포함된다. 합유재산의 분할은 행하여지지 아니한다. 합유재산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타방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그 합유재산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배우자 쌍방이 합유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일방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도 도산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합유재산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계속적 재산공동제에 준용한다. 이 경우 생존배우자는 제1항의 단독으로 합유재산을 관리하는 배우자의 지위를, 비속은 합유재산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타방배우자의 지위를 가진다.

제38조 (도산채권자의 정의) 도산재단은 도산절차개시시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상 청구권을 가진 각 채권자(도산채권자)를 만족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 (후순위 도산채권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도산채권자의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변제한다. 동일순위의 청구권은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변제한다.

1. 도산절차개시후에 발생한 도산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이자
2. 각 도산채권자의 도산절차참가비용
3.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및 금전지급의무가 있는 가벌적 행위 또는 질서위반 행위의 부가형
4. 채무자의 무상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5. 사원의 代償的 消費貸借로 인한 채권 또는 이와 동등한 채권

②채권자와 채무자간에 도산절차에서 후순위로 할 것을 합의한 채권은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명시된 채권에 준하여 변제한다.

③후순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이자와 도산절차참가비용은 그 채권자의 채권과 동일한 순위를 가진다.

제40조 (부양청구권) 친족법상 부양청구권 및 미혼인 자의 모의 상환청구권은 절차개시후 채무자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0조의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41조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①기한미도래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②기한미도래채권이 무이자채권인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제42조 (해제조건부채권) 도산절차에서 해제조건부채권은 조건성취전에는 조건없는 채권으로 본다.

제43조 (수인의 채무자의 책임) 수인이 동일한 내용의 급부 전부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도산절차에 있어서 각 채무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개시시에 청구할 수 있었던 채권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 (연대채무자와 보증인의 권리) 연대채무자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인하여 장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채권은 채권자가 도산절차에 있어서 자신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제45조 (채권의 환산) 금전 또는 금액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채권은 도산절차개시시에 산정한 가치로 행사할 수 있다. 외국통화나 회계단위로 표시된 채권은 도산절차개시시의 지급장소에서의 시세에 의하여 내국통화로 환산한다.

제46조 (회귀적 급부) 금액과 시간적 간격이 정하여진 회귀적 급부는 제41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의 이자를 공제하고 남은 채권액을 행사할 수 있다.

제47조 (환취권) 물권 또는 채권을 근거로 목적물이 도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도산채권자가 아니다. 목적물에 대한 환취의 청구권은 도산절차 이외의 적용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8조 (代償的 還取權) 도산절차개시전에 채무자가 또는 도산절차개시후 도산관재인이 환취를 청구할 수 있었던 목적물을 부당하게 양도한 경우, 환취권자는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한 반대급부에 관한 권리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환취권자는 반대급부를 도산재단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반대급부 자체를 청구할 수 있다.

제49조 (부동산에 관한 별채권) 부동산에 강제집행권이 내재되어 있는 목적물로부터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 채권자는 강제집행및강제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별채권을 가진다.

제50조 (담보권자의 별채권) ①도산재단에 속하는 목적물에 대하여 약정담보권, 압류권, 법정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제166조 내지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채권, 이자 또는 비용에 대한 별채권을 가진다.

②사용임대인 또는 용익임대인은 도산절차에 있어서 도산절차개시전 12월이전의 임대료 및 도산관재인의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정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농업용토지의 용익임대료에 관한 법정질권은 이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51조 (기타의 별채권자) 다음 각호의 1의 채권자등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별채권자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1. 채무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또는 권리를 양도받은 채권자
2. 유치권자
3. 상사유치권자
4. 조세목적상 관세 및 국세의 과세물건이 속해 있는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제52조 (별채권자의 결손) 별채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인적 책임도 부담하는 한 도산채권자이다. 별채권자는 별채권을 포기한 경우 또는 별채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의 채권액에 대하여는 도산재단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제53조 (재단채권자) 도산절차비용 및 기타의 재단채무는 도산재단으로부터 선순위로 변제를 받는다.

제54조 (도산절차비용) 도산절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도산절차에 관한 재판상의 비용
2. 임시도산관재인, 도산관재인 및 채권자위원회 위원의 보수 및 체당금

제55조 (기타의 재단채무) ①기타의 재단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산관재인의 행위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도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으로서 도산절차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도산재단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쌍무계약으로 인한 채무 또는 도산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쌍무계약으로 인한 채무
3. 재단의 부당이득으로 인한 채무

②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가진 임시도산관재인이 도산절차개시후에 부담한 채무는 재단채무로 본다. 임시도산관재인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반대급부청구권을 가지는 한, 계속적 채권관계로 인한 채무도 동일하다.

第3章 倒産管財人. 債權者의 機關

제56조 (도산관재인의 선임) ①현재의 상황에 적합하고 특히 실무경험이 있으며 채권자나 채무자에 종속하지 아니하는 자연인을 도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②도산관재인은 선임증서를 교부받고 직무종료시 동증서를 도산법원에 반납한다.

제57조 (다른 도산관재인의 선임) 채권자는 도산관재인 선임후 최초로 개최하는 채권자집회에서 이미 선임된 도산관재인에 대신하여 다른 도산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집회에서 선임한 도산관재인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다른 도산관재인의 선임을 거절할 수 있다. 법원의 거절에 대하여는 각 도산채권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58조 (도산법원의 감독) ①도산관재인은 도산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법원은 언제든지 도산관재인에게 현황 및 업무집행에 관한 정보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도산법원은 도산관재인이 제1항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전 예고후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강제금은 5만DM를 초과할 수 없다. 도산관재인은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해임된 도산관재인의 반환의무의 이행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제59조 (도산관재인의 해임) ①도산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산관재인을 해임할 수 있다. 해임은 직권 또는 도산관재인, 채권자위원회 또는 채권자집회의 신청에 의한다. 법원은 결정전에 도산관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도산관재인은 해임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도산관재인, 채권자위원회 또는 채권자집회가 해임을 신청한 경우 해임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각 도산채권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60조 (도산관재인의 의무) ①도산관재인은 책임있는 사유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모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도산관재인은 일반적이고 성실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②도산관재인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피용자를 당해 업무범위내에서 계속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피용자가 명백하게 부적합하지 아니한 한 동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민법 제278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피용자의 감독 및 특히 중대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제61조 (재단채무의 불이행) 도산관재인의 법적 행위에 의하여 성립한 도산채무를 도산재단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도산관재인은 도산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단, 도산관재인이 채무의 성립당시에 도산재단이 채무이행에 충분치 아니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 (소멸시효) 도산관재인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손해 및 손해배상의 원인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또한 동청구권은 도산절차의 종결시 또는 폐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제20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추가배당 또는 제26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도산계획수행의 감독에 관한 임무해태에 대하여도 제2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추가배당의 실시 또는 감독종료시점을 도산절차폐지의 시점으로 보고 기간을 계산한다.

제63조 (도산관재인의 보수) 도산관재인은 직무수행에 관한 보수청구권 및 비용상환

청구권을 가진다. 보수는 도산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시의 도산재단의 가액에 따라 정한다. 보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도산관재인인 직무수행의 범위 및 중요도를 고려한다.

제64조 (법원에 의한 확정) ①도산법원은 도산관재인인 보수 및 상환하여야 할 비용을 결정으로 확정한다.

②결정은 공고하여야 하고, 도산관재인과 채무자 그리고 채권자위원회가 구성된 때에는 동위원회에 송달하여야 한다. 확정된 금액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법원은 공고시결정내용의 전부를 열람할 수 있음을 언급하여야 한다.

③도산관재인, 채무자 및 각 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5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 (명령에 의한 수권) 연방법무부는 법규명령으로 도산관재인인 보수 및 상환비용에 관하여 상세하게 정할 수 있다.

제66조 (계산) ①도산관재인은 직무종료시 채권자집회에 계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산법원은 채권자집회전에 도산관재인의 최종계산을 심사한다. 법원은 동계산을 증거서면과 심사록 그리고 채권자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동위원회의 의견서와 함께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비치한다. 법원은 채권자위원회의 의견제시를 위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비치와 채권자집회의 기일간에는 1주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야 한다.

③채권자집회는 도산관재인에 대하여 도산절차진행중 일정한 시기에 중간계산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7조 (채권자위원회의 구성) ①도산법원은 최초의 채권자집회전에 채권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채권자위원회에는 별채권자, 채권액이 최고인 도산채권자 및 소액채권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상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도산채권자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의 대표자가 동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채권자가 아닌 자도 채권자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제68조 (기타 위원의 선임) ①채권자집회는 채권자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의한다. 도산법원이 이미 동위원회를 구성한 때에는 동위원회의 존속여부를 결의한다.

②채권자집회는 도산법원이 선임한 위원을 퇴임시키고 다른 위원 또는 추가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69조 (채권자위원회의 임무) 채권자위원회의 위원은 도산관재인의 직무수행을 지원·감독한다. 채권자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의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장부와 업무서류를 열람하며 금전거래와 잔고를 조사한다.

제70조 (해임) 도산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권자위원회의 위원을 해임한

다. 해임은 직권 또는 위원이나 채권자집회의 신청에 의한다. 법원은 해임결정전에 해당위원을 심문하여야 한다. 해당위원은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71조 (채권자위원회위원의 책임) 채권자위원회의 위원은 책임있는 사유로 이 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해태한 경우 별제권자 및 도산채권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 (채권자위원회의 결의) 채권자위원회의 결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동의에 의한다.

제73조 (채권자위원회 위원의 보수) ①채권자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에 관한 보수청구권 및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진다. 이 경우 업무소요시간 및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이 경우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 (채권자집회의 소집) ①도산법원은 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 채권자집회에는 모든 별제권자, 도산채권자, 도산관재인 및 채무자가 참가한다.

②채권자집회의 기일, 장소 및 의사일정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채권자집회에서 의사가 연기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5조 (채권자집회의 소집신청) ①채권자집회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자가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1. 도산관재인
 2. 채권자위원회
 3. 5인이상의 별제권자 또는 후순위아닌 도산채권자. 단, 법원이 평가한 이들의 별제권 및 채권의 가액이 총별제권 및 후순위아닌 채권의 총액의 5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1인이상의 별제권자 또는 후순위아닌 도산채권자. 단, 법원이 평가한 이들의 별제권 및 채권이 제3호의 총액의 5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 ②신청일로부터 채권자집회의 기일까지는 2주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③신청자는 소집의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76조 (채권자집회의 결의) ①채권자집회는 도산법원이 이를 주재한다.

②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찬성채권자의 채권총액이 반대채권자의 채권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함으로써 성립한다. 채무자가 인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별제권자의 경우에는 별제권의 가액을 채권액으로 본다

제77조 (의결권의 확정) ①채권의 신고가 있고 도산관재인 또는 의결권이 있는 다른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채권의 보유자는 의결권을 가진다. 후순위채권자는 의결권이 없다.

②이의가 제기된 채권의 보유자는 채권자집회에서 도산관재인 및 출석한 의결권자가 당해 의결권에 대하여 합의하는 경우 의결권을 가진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의결권행사의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도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에 참석한 각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채권자등에 적용한다.

1. 정지조건부채권의 채권자

2. 별채권자

제78조 (채권자집회 결의의 집행금지) ①채권자집회의 결의가 도산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도산법원은 별채권자, 후순위아닌 도산채권자 또는 도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의의 집행을 금지할 수 있다.

②결의집행의 금지사실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결의집행금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각 별채권자와 후순위아닌 도산채권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 결의집행신청의 기각에 대하여는 신청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79조 (채권자집회의 보고) 채권자집회는 도산관재인에 대하여 현황과 직무집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채권자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집회가 도산관재인의 금전거래 및 잔고를 조사할 수 있다.

第3編 倒産節次開始의 效力

第1章 一般的 效力

제80조 (관리권과 처분권의 이전) ①도산절차가 개시되면 도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관리권 및 처분권은 도산관재인에게 이전한다.

②특정인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금지규정(민법 제135조 및 제136조)은 도산절차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담보의 효과 및 강제집행절차 진행중의 압류에 관한 규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1조 (채무자의 처분행위) ①채무자의 도산절차개시후 도산재단에 속하는 목적물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민법 제892조·제893조, 등기된선박및건조중인선박의권리에관한법률 제16조·제17조 및 항공기상의권리에관한법률 제16조·제17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도산재단이 상대방의 반대급부에 의하여 증가한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채무자의 노무관계에 의한 장래의 임금채권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그 임금채권이 도산절차종료 이후의 시기에 관한 것인 한 제1항을 적용한다. 단, 채무자는 도산채권자를 공통적으로 만족시킬 목적으로 임금채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③채무자가 도산절차개시일에 행한 처분행위는 도산절차개시후에 행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2조 (채무자에 대한 변제) 도산절차개시후 채무의 변제를 이행한 경우 채무가 도산재단에 이행되었다더라도 이행시에 절차의 개시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이행은 책임을 면한다. 도산절차개시공고전에 변제한 자는 도산절차개시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제83조 (상속. 계속적 재산공동제) ①도산절차개시전 또는 절차진행중에 채무자가 상속이나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또는 포기는 채무자만이 할 수 있다. 계속적 재산공동제의 거절도 같다.

②채무자가 선순위상속인인 경우, 민법 제2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순위상속인이 승계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속하는 목적물의 처분행위가 후순위상속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때에는, 도산관재인은 그 상속재산에 속하는 목적물을 처분할 수 없다.

제84조 (조합 또는 공동소유의 분할) ①채무자와 제3자가 공유 기타의 공동소유관계 또는 법인격없는 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분할등은 도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별제권자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지분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공유관계에 있어서 폐지청구권에 관한 합의를 영구히 또는 일정기간 배제하거나 해지기간을 정하는 것은 도산절차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간의 공동소유를 목적으로 제1문과 같은 내용을 지시하거나 공동상속인간에 그와 같은 합의를 한 경우도 같다.

제85조 (능동적 소송의 수계) ①도산절차개시시 채무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도산재단에 속하는 목적물에 대한 소송은 도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소송수계가 지연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3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도산관재인이 소송수계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다시 소송당사자로서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

제86조 (수동적 소송의 수계) ①도산절차개시시 채무자에게 제기된 다음 각호의 1에 관한 소송은 도산관재인 또는 채무자가 이를 다시 수계할 수 있다.

1. 도산재단의 목적물의 환취
2. 별제권
3. 재단채무

②도산관재인이 즉시 청구를 승인하면 상대방은 도산채권자로서만 소송비용의 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7조 (도산채권자의 채권) 도산채권자는 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만 채권을 청구할 수 있다.

제88조 (도산절차개시전의 강제집행) 도산채권자가 도산절차개시의 신청전 1월내 또는 신청후에 행한 도산재단에 속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한 보전 처분은 도산절차개시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제89조 (집행금지) ①도산채권자는 도산절차와 진행중에 도산재단 또는 채무자의 기타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

②채권자를 위한 경우라도 도산절차의 진행중에는 채무자의 장래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 제1문은 부양청구 또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한 강제집행의 허가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하여는 도산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도산법원은 결정전에 가명령을 발할 수 있다. 특히 법원은 담보제공과 교환으로 또는 담보제공없이 강제집행을 중단하게 하거나 담보제공과 교환으로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가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90조 (재단채무에 대한 강제집행금지) ①재단채무가 도산관재인인의 법적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도산절차개시후 6월내에 그 채무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

②다음 각호의 1의 채무는 제1항의 재단채무에 속하지 아니한다.

1. 도산관재인이 변제하여야 할 쌍무계약상의 채무
2. 도산관재인이 해지를 할 수 있었던 최초의 기간 이후의 계속적 채권관계로 인한 채무
3. 도산관재인이 도산재단을 위하여 반대급부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계속적 채권관계로 인한 채무

제91조 (기타의 권리취득의 금지) ①도산절차개시후에는 특정한 도산채권자를 위한 처분행위나 강제집행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도산재단에 속하는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유효하게 취득할 수 없다.

②민법 제878조·제892조·제893조, 등기된선박과건조중인선박상의권리에관한법률 제3조제3항·제16조·제17조, 항공기상의권리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제16조·제17조 및 해상법상의 배당규정인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2조 (전체손해) 도산절차개시전후에 도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감소로 도산채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도산절차진행중에는 도산관재인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도산관재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새로이 선임된 도산관재인만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93조 (사원의 무한책임) 법인격없는 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절차진행중에는 도산관재인만이 회사채무에 대한 사원의 무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94조 (상계권의 유지) 도산절차개시시의 도산채권자의 법정상계권 또는 약정상계권은 도산절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95조 (도산절차에서 있어서의 상계의 개시) ①도산절차개시시 쌍방 또는 일방의 상계권이 정지조건부이거나 기한미도래이거나 또는 동종의 급부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계의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비로소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계권이 행사되기 전에 수동채권의 조건이 없어지거나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쌍방 채권이 상이한 통화 또는 회계단위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통화 또는 회계단위를 수동채권의 변제장소에서 환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 환전은 상계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의 변제장소의 환시세에 의한다.

제96조 (상계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다.

1. 도산채권자가 도산절차개시후 도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
2. 도산채권자가 도산절차개시후 다른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3. 도산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적 행위에 의하여 상계권을 취득한 경우
4. 도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재산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도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

제97조 (채무자의 정보·보고 및 협력의무) ①채무자는 도산법원, 도산관재인 및 채권자위원회 그리고 도산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채권자집회에 도산절차에 관한 모든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채무자는 가벌적 행위 및 질서위반행위로 인하여 소추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공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제공한 정보는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소송 또는 질서위반법상의 소송에서 채무자나 형사소송법 제5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무자의 친족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②채무자는 도산관재인의 직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 대하여 정보·보고 및 협력의무의 이행을 위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채무자는 이러한 의무의 이행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여야 한다.

제98조 (채무자의 의무수행) ①도산법원은 채무자의 진실한 증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자로 하여금 선서를 대신하는 증서에 "요청받은 정보를 맹세코 진실하고 완전하게 제공하였다"는 것을 보증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78조 내지 제480조 및 제4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도산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를 강제소환하고 심문후 구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보고의무, 선서를 대신하는 보증의무 또는 도산관재인의 직무수행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채무자가 보고의무 및 협력의무를 회피하려고 한 경우, 특히 도주준비 한 경우
3. 보고의무 및 협력의무의 이행에 반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특히 도산재단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구인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904조 내지 제910조 및 제913조를 준용한다. 구인명령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 도산법원은 즉시 동명령을 취소한다. 구인명령 또는 구인명령취소신청의 기각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제99조 (통신금지) ①도산법원은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알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산관재인에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송부되는 우편물의 전부나 일부를 도산관재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의 명령은 명령의 취지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채무자를 심문한 후에 행한다. 채무자에 대한 사전심문이 중단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심문이유를 밝히고 지체없이 심문을 계속한다.
- ②도산관재인은 인도받은 우편물을 개봉할 수 있다. 도산재단과 무관한 우편물은 즉시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나머지 우편물을 열람할 수 있다.
- ③통신금지명령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 법원은 명령의 원인된 사실이 없어진 경우 도산관재인을 심문한 후 동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0조 (도산재단에 의한 부양) ①채권자집회는 채무자와 그 가족을 도산재단으로 부양할 것인지의 여부 및 부양의 범위에 대하여 결의한다.
- ②채권자집회의 결의전이라도 도산관재인은 채권자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에게 필요불가결한 부양을 할 수 있다. 채무자의 미혼인 미성년자녀, 배우자, 전배우자 및 혼인외 자의 모도 민법 제1615조 l 내지 제1615조 n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고려하여 부양할 수 있다.
- 제101조 (조직상의 대표, 종업원) ①채무자가 자연인이 아닌 경우 제97조 내지 제99조의 규정은 채무자의 대표기관이나 감사기관의 구성원(이사 또는 감사) 및 대표권 있는 무한책임사원에 준용한다. 제97조제1항 및 제98조의 규정은 도산절차개시의 신청전 2년내에 제1문의 지위에서 퇴임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100조의 규정은 채무자를 대표하는 무한책임사원에게도 적용한다.
- 제102조 (기본권의 제한) 제99조 및 제100조제1항제1문에 의하여 기본법 제10조의 서신 및 우편·전신의 비밀에 관한 기본권은 제한된다.

第2章 法律行爲의 履行. 經營協議會의 協力

- 제103조 (도산관재인에의 선택권) ①도산절차개시시 쌍무계약이 채무자와 그 상대방에 의하여 아직 이행되지 아니하였거나 불완전하게 이행된 경우, 도산관재인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고 그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도산관재인이 이행을 거절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도산채권자로서만 이행되지 아니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대방이 도산관재인에 대하여 선택권의 행사를 최고

한 때에는 도산관재인은 즉시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도산관재인은 이를 해대한 경우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4조 (정기행위, 파생금융상품거래) ①시장 또는 거래소의 시세있는 상품의 급부에 관하여 확정된 시기 또는 기간내에 확실하게 이행할 것을 합의하였는데 도산절차개시후에 그 시기 또는 기간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거래소의 시세 있는 금융상품의 급부를 확정된 시기 또는 기간내에 확실하게 이행할 것을 합의하였는데 도산절차개시후에 그 시기 또는 기간의 만료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귀금속의 급부
2. 유가증권 또는 이와 동등한 가치가 있는 권리의 급부. 단, 기업과 계속적 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3. 외국화폐 또는 회계단위로 지급하여야 할 금전급부
4. 채권의 최고액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외국화폐나 회계단위의 환율, 이율 또는 다른 상품·용역의 가치에 따라 정하여지는 금전채권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급부 또는 금전급부에 대한 옵션 및 기타 권리
금융상품의 급부행위가 계약위반시 전체적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한 개괄적 계약의 내용으로 들어 있는 경우, 그 금융상품급부이행의 동시성은 제103조 및 제104조의 의미상 쌍무계약으로 본다.

③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합의된 가액과 합의된 변제일의 계약변제장소에서 도산절차개시후 2번째 평일의 시장가격 또는 거래소시세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정한다. 상대방은 이 채권을 도산채권자로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제105조 (가분급부) 가분급부의 경우 상대방이 도산절차개시시에 이미 자신의 급부의 일부를 이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도산채권자로서 자신이 이행한 급부에 상응하는 반대급부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도산관재인이 아직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도 같다. 상대방은 도산절차개시전에 일부급부를 이행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속한 경우 자신의 반대급부청구권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도산재단으로부터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6조 (가등기) ①채무자의 토지나 등기된 권리의 이전 또는 포기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또는 그 권리의 내용 또는 순서의 변경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토지등기부에 가등기한 채권자는 도산재단으로부터 그 권리를 만족받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기타의 부수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그것이 미이행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된 경우에도 같다.

②선박등기부, 건조중인 선박의 등기부 및 항공기저당권에 관한 등기부상의 가등기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07조 (소유권유보) ①채무자가 도산절차개시전에 동산을 소유권유보부로 매도하고 매수인이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매수인은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부수적 의무를 부담한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에도 같다.

②채무자가 도산절차개시전에 동산을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하고 매도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선택권을 행사할 것을 최고받은 도산관재인은 보고기간후 지체없이 제103조제2항제2문의 규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보고기간내에 목적물의 가치에 중대한 감소가 있을 것이 예상되고 채권자가 이를 도산관재인에게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8조 (계속적 채권관계의 존속) ①부동산 또는 일정공간에 대한 채무자의 사용 및 용익임대차관계 또는 채무자의 고용관계는 도산재단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②그 상대방은 도산절차개시전의 시기에 관한 청구권을 도산채권자로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제109조 (사용 또는 용익임차인인 채무자) ①채무자가 사용 또는 용익임차인인 경우 도산관재인은 합의된 약정기간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을 준수하여 부동산 또는 일정공간에 대한 사용 또는 용익임대차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도산관재인이 제1문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은 도산채권자로서 임대차의 조기종료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임대차의 목적인 부동산 또는 일정공간의 점유가 도산절차개시시에 채무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산관재인 및 상대방인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도산관재인이 해지한 경우 상대방은 도산채권자로서 임대차의 조기종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방당사자는 타방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2주내에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하면 해제권을 상실한다.

제110조 (사용 또는 용익임대인인 채무자) ①부동산 또는 일정공간의 임대인인 채무자가 도산절차개시전에 장래의 시기에 대한 차임청구권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도산절차가 개시된 달의 차임에 대한 것만 유효하다. 단, 도산절차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후인 때에는 익월의 차임에 대한 처분행위도 유효하다.

②임대료의 압류는 제1항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강제집행에 의한 처분행위도 법률행위로 인한 처분행위와 같다.

③임차인은 제1항의 기간의 차임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 및 제96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11조 (임대목적물의 양도) 도산관재인이 채무자가 임대한 목적물을 양도하여 양수인이 임대차의 당사자가 된 경우 양수인은 법정기간을 준수하여 해지할 수 있다. 해지는 그것이 허용된 최초의 기간에만 가능하다. 이 경우 강제경매및강제관리에관한법률 제57조c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2조 (해지금지)채무자가 임대인인 임대차의 경우 상대방은 도산절차개시후 다음 각호의 1의 원인에 의하여 해지할 수 없다.

1. 도산개시신청전의 차임지급의 지체
2. 채무자의 재산상태의 악화

제113조 (고용관계의 해지) ①고용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사용자인 경우 도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은 약정기간 또는 통상의 해지권을 보유하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해지할 수 있다. 해지기간은 3월로 한다. 도산관재인이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은 도산채권자로서 고용관계의 조기종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도산관재인이 해고제한법 제1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해고하였음을 이유로 해고무효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도달후 3주내에 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고제한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4조 (고용관계의 임금) ①채무자가 도산절차개시전에 장래의 시기에 대한 임금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도산절차개시 당월말이후 3년이 경과하기 전의 임금에 대하여만 유효하다.

②제1항에 명시된 기간내의 임금채권의 채무자는 당해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 및 제96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도산절차개시전의 강제집행에 의한 장래의 임금채권에 대한 처분행위는 도산절차개시 당월의 임금에 대한 것만 유효하다. 단, 도산절차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그 익월의 임금에 대한 처분도 유효하다. 이 경우 제88조의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제8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5조 (위임의 종료) ①채무자가 도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행한 위임은 도산절차개시로 효력을 상실한다.

②수임인은 사무관리의 지연으로 인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도산관재인이 다른 방법으로 관리를 할 때까지 사무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위임은 그 한도내에서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수임인은 도산채권자로서 사무관리의 계속으로 인한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고의 또는 과실없이 도산절차개시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위임은 수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수임인은 도산채권자로서 위임계속으로 인한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16조 (사무관리계약의 종료) 제115조의 규정은 고용 또는 도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사무관리의무를 부담한 자에게 적용한다. 이 경우 제115조의 사무관리의 계속으로 인한 배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보수청구권에도 준용한다.

제117조 (대리의 종료) ①채무자가 도산재단에 속하는 목적물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그 대리권은 도산절차개시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②위임 또는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무관리계약이 계속되는 한 대리권도 존속한다.

③대리인이 고의 또는 과실없이 도산절차개시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 제179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18조 (회사의 해산) 법인격없는 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되고 이로 인하여 법인격없는 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업무집행사원은 긴급을 요하는 사무를 계속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을 도산채권자로서 행사한다. 업무집행사원은 고의 또는 과실없이 도산절차개시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행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을 도산채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4조제1항의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19조 (개별약정의 무효) 제103조 내지 제118조의 규정을 배제 또는 제한할 목적으로 행한 사전합의는 효력이 없다.

제120조 (경영체내의 합의의 해지) ①경영체내의 합의에 의하여 도산재단이 부담할 급부가 정하여지는 경우 도산관재인과 경영협의회는 그 급부의 감액을 협의하여야 한다. 경영체내의 합의에 3개월을 초과하는 해지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3개월로 한다.

②중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영체내의 합의를 해지할 수 있다.

제121조 (경영체변경 및 중재절차) 사업주의 재산에 관한 도산절차에 있어서는, 도산관재인과 경영협의회가 공동으로 중재를 신청하고 주노동청장의 중재시도가 선행되는 경우에만 중재원에서의 절차에 관하여 경영조직법 제112조제2항제1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2조 (경영체변경을 실행하기 위한 법원의 동의) ①경영체변경이 계획되고 도산관재인이 경영협의회에 적시에 포괄적으로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산관재인과 경영협의회간에 경영조직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조정 협의개시후 또는 서면에 의한 협상수락촉구후 3주내에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산관재인은 경영조직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경영체변경을 실행하기 위한 노동법원의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경영조직법 제113조제3항의 규정은 그 한도내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산관재인의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조정권 또는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권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노동법원은 근로자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고려하에 기업의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경영조직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영체변경이 요청되는 경우 전항의 동의를 한다. 이 경우 노동법원법의 결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도산관재인 및 경영협의회가 이해관계인이 된다. 신청은 노동법원법 제 61조a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행하여야 한다.

③노동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주노동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없다. 단, 노동법원의 결정에서 허용하는 경우 연방노동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법원법 제7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방법원에의 항고는 결정의 송달후 1개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23조 (사회계획의 범위) ①도산절차개시후 작성하는 사회계획에서는 경영체변경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의 조정 또는 축소를 위하여 퇴직근로자의 2개월 반분의 임금총액(해고제한법 제10조제3항)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회계획으로 인한 채무는 재단채무이다. 그러나 도산계획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사회계획이 없었다면 도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할 수 있었을 재단의 3분의 1을 초과한 금액을 사회계획채권을 결제하는데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회계획채권의 총액이 이러한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회계획채권은 안분비례로 축소한다.

③도산재단에 충분한 현금이 있는 경우 도산관재인은 도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사회계획채권에 분할지급하여야 한다. 사회계획채권을 이유로 하는 도산재단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24조 (도산절차개시전 사회계획) ①도산절차개시전 또는 절차개시신청전 3월 이후에 작성한 사회계획은 도산관재인 및 경영협의회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②사회계획이 철회된 경우 철회된 사회계획에 의한 채권을 가진 근로자는 도산절차에서 사회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고려될 수 있다.

③근로자가 철회된 사회계획에 의한 자신의 채권으로 인하여 도산절차개시전에 수령한 급부는 사회계획의 철회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새로운 사회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퇴직근로자에 대한 급부는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월 반분의 임금최고액까지 삭감할 수 있다.

제125조 (이익조정 및 해고제한) ①경영체변경(경영조직법 제111조)이 계획되고 도산관재인과 경영협의회간에 해고대상근로자의 성명이 표시되는 이익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해고제한법 제1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경영체내에서의 계속고용 또는 변경되지 아니한 근로조건하에서의 계속고용에 반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하여 이익조정에 명시된 근로자의 해고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근로자를 취사선택함에 있어서는 동경영체에서의 근로기간, 연령, 부양의무 및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균형잡힌 고용구조가 유지 또는 형성되는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문은 이익조정후 상당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이익조정은 해고제한법 제17조제3항제2문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협의회 의장의 입장을 대신한다.

제126조 (해고제한에 관한 결정절차) ①경영체에 경영협의회가 없거나 도산판재인이 적시에 광범위하게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다른 사유에 의하여 제125조 제1항의 이익조정이 협상개시후 또는 협상수락의 서면통지후 3주내에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산판재인은 노동법원에 대하여 신청에 명시된 근로자의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인하여 요청되고 사회적으로 정당한 것이었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근로자를 취사선택함에 있어서는 근로기간, 연령 및 부양의무를 고려할 수 있다.

②이 경우 노동법원법의 결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도산판재인, 경영협의회 및 근로관계의 종료 또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해고대상근로자가 이해관계인이 된다. 이 경우 제122조제2항제3문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심의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노동법원법 제12조a제1항제1문 및 제2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방노동법원의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7조 (근로자의 소제기) ①도산판재인이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대상으로 표시된 근로자를 해고하고 그 근로자가 당해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거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부당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있어서의 확정력 있는 판결은 양당사자를 구속한다. 단, 최후의 구두변론후 상당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근로자가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있어서 판결의 확정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도산판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송의 심리를 판결의 확정력이 발생할 때까지 중단한다.

제128조 (경영체의 양도) ①이익조정이나 확인신청의 기초가 된 경영체의 변경이 경영체의 양도후에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제125조 내지 제1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경영체의 양수인은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참가한다.

②경영체양도의 경우 제125조제1항제1문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정 또는 제126조 제1항제1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해고가 경영체의 양도로 인하여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도 해당된다.

第3章 否認權

제129조 (기본원칙) ①도산관재인은 제130조 내지 제146조에 의하여 도산절차개시 전에 행하여진 도산채권자를 해하는 법적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②부작위는 법적 행위와 동일시된다.

제130조 (정당한 변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도산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행위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산절차개시의 신청전 3월내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행위시 채무자가 지급불능이었고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
2. 도산절차개시의 신청후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행위시 채권자가 지급불능의 사실 또는 도산절차개시의 사실을 알았던 경우

②지급불능 또는 개시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지급불능 또는 개시신청의 사실을 알았던 것과 동일시된다.

③행위시 채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던 자(제138조)는 지급불능 또는 개시신청의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제131조 (부당한 변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도산채권자가 청구할 권한이 없었거나 종류 또는 청구시기가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산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변제한 행위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산절차개시의 신청 직전월 또는 그 신청후의 행위
2. 도산절차개시의 신청전 2월 내지 3월내의 행위로서 행위시 채무자가 지급불능이었던 경우
3. 도산절차개시의 신청전 2월 내지 3월내의 행위로서 행위시 채권자가 도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았던 경우

②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은 제1항제3호의 도산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과 동일시된다. 행위시에 제138조에서 규정하는 채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자는 도산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제132조 (직접적으로 손해를 주는 행위) ①도산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주는 다음 각호의 1의 법률행위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산절차개시의 신청전 3월내에 행하여진 법률행위로서 행위시에 채무자가 지급불능이었고 상대방이 지급불능 사실을 알았던 경우
2. 도산절차개시의 신청후의 행위로서 상대방이 행위시에 지급불능 또는 개시신청의 사실을 알았던 경우

②채무자의 법적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권리를 상실하거나 행사할 수 없게 되거나 상대방이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법적 청구권을 취득하거나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행위는 도산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와 동일시된다.

③이 경우 제1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3조 (채권자를 해하는 고의행위) ①채무자가 도산절차개시의 신청전 10년내에 또는 신청후에 고의로 채권자를 해하는 법적 행위를 한 경우, 행위시에 상대방이 채무자의 고의를 알았다면 그 법적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채무자에게 지급불능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 및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악의가 추정된다.

②채무자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제138조)와 맺은 유상계약으로서 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주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단, 계약이 도산절차개시의 신청전 2년 이전에 체결되었거나 상대방이 계약체결시에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하려는 고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제134조 (무상행위) ①채무자의 무상급부는 도산절차개시의 신청전 4년 이전의 것이 아닌 한 취소할 수 있다.

②급부가 경미한 저가의 관용적인 일반선물인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제135조 (자본전보소비대차) 사원이 자본전보소비대차의 상환보증채권 또는 이와 동등한 가치가 있는 채권을 위하여 행한 다음 각호의 1의 법적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1. 도산절차개시의 신청전 10년내 또는 그 신청후의 담보설정행위
2. 도산절차개시의 신청전 1년내 또는 그 신청후의 변제

제136조 (익명조합) ①익명조합원에게 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손실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는 법적 행위로서, 이러한 상환 또는 면제에 관한 합의가 도산절차개시의 신청전 1년내 또는 그 신청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 합의와 관련하여 익명조합이 해산한 경우도 같다.

②도산절차가 제1항의 합의후에 개시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제137조 (어음·수표의 지급) ①어음법에 따라 수취인이 지급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다른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에게 채무자의 어음금의 지급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그러나 최후의 소구의무자 또는 소구의무자로부터 어음을 양도받은 제3자는 양도시 채무자의 지급불능 또는 개시신청의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어음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채무자의 수표금의 지급에도 적용한다.

제138조 (특수관계인) ①채무자가 자연인인 경우 채무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채무자의 배우자. 혼인관계가 법적 행위후 종료되었거나 행위전 1년내에 소멸된 경우의 배우자도 같다.

2. 채무자 또는 제1호의 배우자의 존속과 비속, 동부모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및 이부모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3. 채무자와 가사를 같이 하거나 행위전 1년내에 가사를 같이 했던 자

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격없는 회사인 경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대표기관구성원(이사), 감사기관 구성원(감사), 무한책임사원 및 채무자의 자본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지분을 가진 자

2. 채무자와의 회사법적 또는 고용계약상의 관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정상태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에 명시된 자와 제1항의 관계가 있는 자. 단, 제1호 및 제2호에 명시된 자가 법률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 (도산절차개시의 신청전 기간의 계산) ①제88조 및 제130조 내지 제13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은 도산절차개시의 신청이 도산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문에 해당하는 날이 없는 때에는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②수개의 도산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의 신청을 이유로 도산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처음 접수된 신청을 기준으로 한다. 기각된 신청은 재단부족으로 인하여 기각된 것만을 고려한다.

제140조 (법적 행위의 착수시기) ①법적 행위는 법적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부, 선박등기부, 건조중인 선박의 등기부 또는 항공기저당등기부등에의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와 상대방의 권리변경등기신청등 효력발생의 기타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권리변경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신청이 권리변경등기 신청지에서 행하여진 경우 제1문을 적용한다.

③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적 행위에 있어서는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141조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무명의) 법적 행위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무명의가 있거나 그 행위가 강제집행을 통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2조 (현금거래) 즉시 동등한 가치의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채무자의 급부는 제13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

제143조 (법적 효력) ①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양도, 매도 또는 포기된 것은 도산재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법적 효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무상급부의 수령인은 이로 인해 이득을 얻은 경우에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수령인이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4조 (취소상대방의 청구권) ①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수령인이 반환한 경우 그의 채권은 부활한다.

②반대급부가 도산재단으로부터의 구분이 가능하거나 도산재단이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 그 상대방은 반대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급부의 수령인은 도산채권자로서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45조 (권리승계인에 대한 취소) ①취소권은 상대방의 상속인 기타 포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②그 밖의 승계인에 대한 취소권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행사할 수 있다.

1. 승계인이 취득시 자신의 취득에 취소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경우
2. 승계인이 권리취득시 제138조에서 규정하는 채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단, 당해 취득에 취소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승계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제146조 (취소권의 시효) ①취소권은 도산절차개시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②도산관재인은 취소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기인하는 급부의 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제147조 (도산절차개시후의 법적 행위) ①도산절차개시후 행하여진 것으로 민법 제 892조·제893조, 등기된선박및건조중인선박상권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7조 및 항공기상의 권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법적 행위는 도산절차개시전 법적 행위의 취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제1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멸시효기간은 행위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한다.

第4編 倒産財團의 管理 및 換價

第1章 倒産財團의 保全

제148조 (도산재단의 인수등) ①도산절차개시후 도산관재인은 즉시 도산재단에 속하는 전재산을 점유하고 관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도산관재인은 강제집행이 가능한 개시결정의 정본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중에 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인도받을 수 있다. 도산법원이 강제집행법원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7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9조 (목적물) ①채권자위원회는 금전·유가증권·고가품을 공탁 또는 투자할 장소 및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채권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산법원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채권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산관재인은 채권자위원회의 위원이 수령증에 연서한 때에만 공탁·투자장소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및 고가품을 수령할 수 있다. 도산관재인의 공탁소등에 대한 지시는 채권자위원회의 위원이 연서한 때에만 유효하다.

③채권자집회는 이와 상이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150조 (봉인) 도산관재인은 도산재단에 속하는 물건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집행관 또는 법적으로 그와 동일한 권한을 수여받은 자에게 봉인하게 할 수 있다. 도산관재인은 봉인조서 또는 봉인제거조서를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51조 (재단목적물표) ①도산관재인은 도산재단에 속하는 각 목적물의 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참석시켜야 한다.

②각 목적물에 대하여 그 가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액이 기업의 계속 또는 폐지여부에 의존한다면 두 경우의 가액 모두를 표시하여야 한다. 특별히 중요한 평가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도산법원은 도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표작성의 중단을 허가할 수 있다. 그 신청에는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채권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도산관재인은 동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제152조 (채권자표) ①도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장부 및 영업서류에 의하거나 채무자의 보고, 채권의 신고 또는 기타의 다른 방법으로 알고 있는 모든 채권자의 목록을 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채권자표에는 별채권자 및 후순위채권자 각각의 순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각 채권자에 대하여는 주소·성명, 채권의 성립이유 및 채권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별채권자에 대하여는 이외에도 별채권의 목적물 및 예상할 수 있는 결손의 최고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1조제2항제2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그밖에 상계가능성이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재산을 급하게 환가하는 때에는 재단채무의 최고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53조 (재산개요) ①도산관재인은 도산절차개시시의 재산의 개요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개요에는 도산재단의 목적물과 채무자의 채무를 기재하고 상호 대조시켜야 한다. 목적물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151조제2항, 채무의 분류에 관하여는 제152조제2항제1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원은 재산개요작성후 도산관재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그 재산개요의 진실성을 선서에 대신하여 보증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8

- 조, 제101조제1항제1문 및 제2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4조 (법원에의 비치) 재단목적물표, 채권자표 및 재산개요는 보고기간전 1주동안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155조 (상법 및 조세법상의 계산) ①채무자의 상법 및 조세법상의 장부작성·계산의무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도산재단에 관하여는 도산관재인이 이러한 의무를 수행한다.
- ②도산절차의 개시로 새로운 사업년도가 시작된다. 단, 그 시기가 연말결산의 작성 또는 보류에 관한 법정기한내인 경우 보고기간까지 연기한다.
- ③도산절차에 있어서 결산검사인이 도산관재인의 신청에 따라 등록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는 경우에는 그 결산검사인 선임에 관하여 상법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도산절차개시전에 이미 그 사업년도의 결산검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은 도산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유효하다.

第2章 換價

- 제156조 (보고기일) ①도산관재인은 보고기일에 채무자의 재정상태 및 그 원인을 보고하여야 한다. 도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것인가의 여부, 도산계획의 가능성 여부 및 채권자의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②보고기일에 채무자, 채권자위원회, 경영협의회 및 주요근로자대표위원회에 대하여 도산관재인의 보고에 관한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상업, 기타 영업 또는 농업을 영위하는 자인 때에는 산업, 상업, 수공업 및 농업의 직무상의 대리인에게도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57조 (절차계속의 결정) 채권자집회는 보고기일에 채무자의 기업의 폐지 또는 계속 여부를 결정한다. 채권자집회는 도산관재인에게 도산계획을 달성할 것을 위임하고 계획의 목적을 제시할 수 있다. 채권자집회는 그 후에 판단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58조 (채권자집회결의전의 조치) ①도산관재인이 보고기일에 채무자의 기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채권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때에는 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동위원회의 결의전이나 동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업의 폐지전에 채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산법원은 보고기간까지 기업의 폐지를 연기하더라도 도산재단의 현저한 감소가 없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도산관재인을 심문한 후 기업의 폐지를 금지한다.
- 제159조 (도산재단의 환가) 도산관재인은 보고기일후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도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야 한다.

제160조 (특별히 중대한 법적 행위) ①도산관재인이 도산절차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법적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채권자위원회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 채권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동의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특히 요구된다.

1. 기업 또는 영업, 소매점, 부동산, 채무자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분 또는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권리를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
2. 도산재단에 특히 상당한 부담이 되는 금전소비대차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소가가 상당한 소송의 계속수행·응소·응소회피 또는 그러한 소송의 조정·예방을 위한 조정·중재계약체결의 경우

제161조 (법적 행위의 일시금지) 제160조의 규정의 경우 지체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도산관재인은 채권자위원회 또는 채권자집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자집회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산법원은 채무자 또는 제7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과반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도산관재인을 심문한 후 법적 행위를 일시금지하고 그 법적 행위의 수행여부를 결정할 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2조 (특별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영업양도) ①기업 또는 영업의 5분의 1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업 또는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

1. 채무자와 제13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2. 별채권 또는 채권의 가액이 도산법원의 평가에 의한 전체 별채권 및 후순위안인 도산채권자의 채권의 총액의 5분의 1이상인 1인의 별채권자 또는 후순위안인 도산채권

②어떠한 자에게 종속된 기업 또는, 그 자 또는 지배자나 종속기업의 계산으로 제3자가 양수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자도 제1항에서 정하는 양수인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3조 (시가이하의 영업양도) ①채무자 또는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자의 과반수의 신청이 있고, 신청자가 다른 양수인에 대한 기업 또는 영업의 양도가 도산재단에 유리하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도산법원은 도산관재인을 심문한 후 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 기업 또는 영업을 양도할 수 있음을 명할 수 있다.

②신청자는 신청을 함에 있어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1항의 법원의 명령후 도산재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상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4조 (행위의 효력) 제160조 내지 제16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도산관재인의 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第3章 別除權의 目的物

제165조 (부동산의 환가) 도산관재인은 관할법원에서 도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부동산에 별채권이 있는 경우도 같다.

제166조 (동산의 환가) ①도산관재인은 별채권이 있는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경매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가할 수 있다.

②도산관재인은 채무자가 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양도한 채권을 압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제167조 (채권자에 대한 통지) ①도산관재인은 제1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을 환가할 권한을 가진 경우, 요청에 의하여 별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상태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에 갈음하여 별채권자로 하여금 목적물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도산관재인은 제1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압류 할 권한이 있는 경우 요청에 의하여 별채권자에게 그 채권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에 대신하여 채무자의 장부 및 영업서류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8조 (매각의사의 통지) ①도산관재인은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환가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전에 별채권자에게 매각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산관재인은 1주 이내에 1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채권자에게 보다 유리한 환가방법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1주 또는 정해진 기간내에 제1항의 제시가 있는 경우 도산관재인은 그 환가방법을 조사하고, 조사를 완료한 경우 별채권자에게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③별채권자가 목적물을 직접 양수하는 방법에 의한 환가도 가능하다. 비용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환가방법이 유리한 것이라고 본다.

제169조 (환가전 채권자보호) 도산관재인은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가할 권한이 있는 목적물을 환가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에는 채권자에게 도산재단으로부터 보고 기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도산절차개시전에 이미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보전조치로 인하여 목적물의 환가를 방해받은 경우에는 그 보전조치명령후 3월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채권최고액, 목적물의 가액 및 기타 그 목적물의 부담을 고려할 경우 환가액으로 그 채권을 변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1문 및 제2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0조 (환가액의 배당) ①도산관재인은 동산 또는 채권의 환가후 환가액에서 먼저 목적물의 확정 및 환가비용을 도산재단에 귀속시켜야 한다. 그 나머지 금액으로 별채권자에게 변제한다.

②도산관재인이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가할 권한이 있는 목적물을 환가를 위

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가 목적한 환가액으로부터 목적물확정비용 및 제171조제2항제3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의 최고액을 먼저 도산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71조 (비용의 계산) ①제170조제1항제1문에서 규정하는 목적물확정비용은 목적물의 실제확정비용 및 목적물상의 권리확정비용을 포함한다. 확정비용은 총계하여 환가액의 100분의 4로 하여야 한다.

②환가비용은 총계하여 환가액의 100분의 5로 하여야 한다. 실제로 소요된 환가비용이 상당히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그 실제소요비용을 환가비용으로 한다. 환가로 인하여 재단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때에는 그 양도소득세액은 추가적으로 제1문의 총계액 또는 제2문의 실제소요비용에 포함된다.

제172조 (동산의 이용) ①도산관재인은 자신이 환가할 권한이 있는 동산을 재단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도산관재인은 도산절차개시후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계속적인 지급을 통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보상지급의무는 목적물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손실로 별채권자의 담보가 침해된 때에 한한다.

②도산관재인은 별채권자의 담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한 제1항의 목적물을 부합, 혼화 또는 가공할 수 있다. 부합등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다른 물건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때에는 새로운 담보가 부합등 전의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새로운 담보는 해제하여야 한다.

제173조 (채권자에 의한 환가) ①도산관재인이 별채권이 존재하는 동산 또는 권리를 환가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가 환가할 수 있다.

②도산관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를 심문한 후 채권자가 목적물을 환가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 기간의 종료후에는 도산관재인이 환가할 수 있다.

第5編 倒産債權者에 대한 辨濟. 倒産節次의 廢止

第1章 債權의 確定

제174조 (채권의 신고) ①도산채권자는 채권을 서면으로 도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성립의 증거문서의 사본이 신고시에 첨부되어야 한다.

②신고시에는 채권의 원인 및 채권액이 첨부되어야 한다.

③후순위채권자의 채권은 도산법원이 특별히 신고할 것을 최고한 경우에만 신고한다. 이 경우 후순위라는 것과 채권의 순위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175조 (표) 도산관재인은 제17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된 채권전부를 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 채권표는 신고서류 및 첨부서류와 함께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도산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신고기간

의 종료일로부터 조사기간의 개시 전일까지의 기간의 최초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제176조 (조사기간의 경과) 조사기간내에 신고된 채권의 채권액 및 순위를 조사한다.
도산관재인, 채무자 또는 도산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은 개별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제177조 (추가신고) ①신고기간경과후 신고된 채권도 조사기간내에 조사한다. 도산관재인이나 도산채권자가 제1문의 조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사기간후 신고된 채권이 있는 경우, 도산법원은 신고를 지체한 자의 비용으로 특별조사기간을 정하거나 서면절차에 의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신고의 변경을 지체한 경우에도 제1문 및 제2문을 적용한다.

②법원은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순위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그 신고기간이 조사기간전 1주보다 늦게 종료하는 경우에는, 도산재단의 비용으로 특별조사기간을 정하거나 서면절차에 의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특별조사기간은 공고하여야 한다. 채권을 신고한 도산채권자, 도산관재인 및 채무자는 제2항의 특별조사기간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178조 (채권확정의 요건 및 효력) ①조사기간내에 또는 제177조의 서면에 의한 조사기간내에 도산관재인 또는 도산채권자의 이의가 없거나 제기된 이의가 제거된 경우에는 채권은 확정된다. 채무자의 이의는 확정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도산법원은 신고된 모든 채권에 대하여 채권액과 순위 또는 채권의 확정애 이의를 제기한 자를 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원공무원은 채권확정사실을 어음 및 기타 채무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확정된 채권을 채권표에 기재함으로써 동채권은 채권액과 순위애 관하여 도산관재인 및 모든 채권자에게 확정력있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79조 (이의가 제기된 채권) ①도산관재인 또는 도산채권자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채권의 채권자는 이의자에 대하여 채권의 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강제집행력있는 채무명의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는 소로써 주장하여야 한다.

③도산법원은 이의가 제기된 채권의 채권자에게 채권표의 인증등본을 교부한다. 제2항의 경우 이의자도 그 등본을 교부받는다. 확정채권의 채권자는 보고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확정채권의 채권자는 조사기간전에 손해사실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80조 (채권확정에 관한 소의 관할) ①채권확정은 통상의 소애 의한다. 채권확정의 소는 도산절차가 계속되거나 계속되었던 구법원의 관할애 속한다. 소송목적물이 구법원의 관할애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산법원이 속한 지역의 주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도산절차개시시에 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소송속행애 의하여 채권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81조 (채권확정의 범위) 채권확정은 채권의 원인, 채권액 및 채권의 순위에 따라 신고시 또는 조사시에 명시된 방법으로만 행할 수 있다.

제182조 (소송가액) 이의가 제기된 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에 있어서 소송목적물의 가치는 도산재단의 배당에 의하여 그 채권에 기대되는 금액을 표준으로 하여 정한다.

제183조 (판결의 효력) ①채권확정소송의 판결은 도산관재인 및 모든 도산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다.

②승소한 당사자는 도산법원에 채권표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도산관재인이 아닌 개별채권자가 채권확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결로 인하여 도산재단에 이익이 있는 때에는 도산재단에 대하여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4조 (채무자의 이의에 대한 소) 채무자가 채권조사기간 또는 서면심리(제177조)를 함에 있어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도산절차개시시에 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속행할 수 있다.

제185조(특별관할) 통상의 법원에 채권확정을 위한 법적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 또는 관할행정관청에 채권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0조제2항, 제181조, 제183조 및 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른 법원에 확정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1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6조 (조사기간해태의 추완) ①채무자가 조사기간을 해태한 경우 도산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추완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51조제2항, 제85조제2항, 제233조 내지 제2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추완신청에 관한 문서는 사후에 이의가 제기될 채권의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추완이 허용된 경우 이러한 문서상의 이의는 조사기간내의 이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第2章 配當

제187조 (도산채권자에 대한 변제) ①통상적인 채권조사기간후에 도산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행한다.

②도산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도산재단에 충분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행한다. 분할배당에 있어서는 후순위채권자가 제외된다.

③배당은 도산관재인이 이를 행한다. 채권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산관재인은 배당전에 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8조 (배당표) 도산관재인은 배당전에 배당시 고려하여야 할 채권에 관한 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배당표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도산관재인은 채권총액과 배당을 위하여 도산재단으로부터 처분할 수 있는 금액을 공

고하여야 한다.

제189조 (이의있는 채권에 대한 고려) ①확정되지 아니하고 채무명이나 확정판결도 없는 채권을 가진 도산채권자는 배당공고후 2주내에 도산관재인에게 채권확정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 또는 이전에 계속된 소송을 수계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증명이 그 기간내에 있는 경우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그 채권에 할당되는 몫은 배당을 함에 있어 보류한다.

③제1항의 증명이 그 기간내에 없는 경우 그 채권은 배당으로부터 제외된다.

제190조 (별채권자에 대한 고려) ①별채권자는 배당공고후 2주내에 도산관재인에게 별채권의 행사를 포기한 사실 또는 별채권의 행사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금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이를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그 채권은 배당으로부터 제외된다.

②별채권자는 분할배당을 함에 있어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배당공고후 2주내에 도산관재인에게 별채권이 존재하는 목적물의 환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예상 가능한 손실금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채권에 할당되는 몫은 배당을 함에 있어 보류한다. 최후배당시에 제1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채권자를 위하여 유보된 할당분은 최후배당을 위하여 제공된다

③도산관재인만이 별채권이 존재하는 목적물을 환가할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분할배당을 함에 있어 도산관재인이 그 때까지도 목적물을 환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채권자의 손실을 산정하고 그 채권에 할당되는 몫은 보류한다.

제191조 (정지조건부채권에 대한 고려) ①정지조건부채권은 분할배당시에 총액으로 고려한다. 그 채권에 할당되는 몫은 배당시에 보류한다.

②정지조건부채권이 최후배당시까지도 조건성취의 가능성이 없어서 하등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최후배당에서 제외한다.

제192조 (추가배당) 분할배당을 함에 있어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추후에 제189조 및 제19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채권은 후속배당에 있어서 잔여도산재단으로부터 동순위의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다.

제193조 (배당표의 변경) 도산관재인은 제189조 내지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189조제1항의 규정에 명시된 기간(배당공고후 2주)의 경과후 3주내에 배당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94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제기) ①분할배당을 함에 있어 채권자는 제189조제1항의 규정에 명시된 기간(배당공고후 2주)의 경과후 1주내에 도산법원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제기를 기각한 경우 법원은 그 결정서를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 및 도산관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③배당표의 갱정을 명하는 경우 법원은 그 결정서를 제1항의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 및 도산관재인에게 송달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도산관재인 및 도산채권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항고기간은 배당표의 갱정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서가 비치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95조 (배당률의 확정) ①채권자위원회는 도산관재인의 제안에 의하여 일부배당에 관한 배당률을 정한다. 채권자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산관재인이 배당률을 정한다.

②도산관재인은 결정된 배당률을 배당받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6조 (최후배당) ①최후배당은 도산재단의 환가가 종료한 즉시 이를 행한다.

②최후배당을 함에 있어서는 도산법원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

제197조 (최후기일) ①도산법원은 최후배당을 함에 있어 최종채권자집회의 기일을 정한다. 최종채권자집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행한다.

1. 도산관재인의 결산에 관한 설명
2. 최종표에 대한 이의제기
3. 도산재단중 환가가 불가능한 목적물에 대한 채권자의 결정

②최종채권자집회의 기일은 공고후 3주 내지 1월의 기간내에서 정한다.

③법원의 결정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에 대하여는 제19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8조 (최후배당에서 보류된 금액의 공탁) 도산관재인은 도산법원의 동의를 얻어 최후배당에서 보류된 금액을 이해관계인을 위하여 적당한 장소에 공탁하여야 한다.

제199조 (최후배당시의 잔여금) 도산관재인은 최후배당시에 모든 도산채권자의 채권을 최고액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자연인이 아닌 경우에는 도산절차외의 청산에 의하여 채무자의 권한있는 이해관계인에게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00조 (도산절차의 종결) ①도산법원은 최후배당후 즉시 도산절차의 종결을 결정한다.

②종결의 결정 및 그 원인은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는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췌하여 연방공보에 게재한다. 이 경우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1조 (도산절차종결후의 도산채권자의 권리) ①도산채권자는 절차종결후 잔여채권을 제한없이 채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②확정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채권조사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권의 경우, 그 도산채권자는 채권표에의 기재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력있는 판결과 동

일하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 이의가 제거된 채권은 이의없는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③잔여채무면책에 관한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02조 (강제집행시의 관할권) ①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경우, 도산절차가 계속되고 있거나 계속되었던 구법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소송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1. 집행문부여의 소
2. 집행문부여후 집행문부여요건의 존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
3. 청구권 자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소

②소송의 목적물이 제1항의 구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산법원이 속한 지역의 주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제203조 (추가배당명령) ①최후기간 이후에 다음 각호의 1의 사정이 있는 경우 도산법원은 도산관재인이나 도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추가배당을 명한다.

1. 배당을 함에 있어 보류한 금액이 해제된 경우
2. 도산재단에서 지급한 금액이 다시 도산재단으로 유입된 경우
3. 재단목적물이 발견된 경우

②도산절차의 종결은 추가배당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도산법원은 추가배당금 또는 목적물의 가치가 경미하다는 사실 및 추가배당비용을 고려하여 추가배당을 명하지 아니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과 제3호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추가배당비용으로 지급할 금액이 채당된다는 사실은 추가배당명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204조 (불복) ①추가배당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문을 신청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추가배당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문을 도산관재인과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또한 채권자가 추가배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205조 (추가배당의 집행) 도산관재인은 추가배당명령후에 최후표에 근거하여 처분을 위하여 준비된 금액 및 발견된 목적물의 환가액을 배당하여야 한다. 도산관재인은 도산법원에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6조 (재단채권자의 제외) 다음 각호의 1의 재단채권자는 도산재단의 배당후의 잔여금에 대하여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1. 분할배당에 있어서 배당률의 결정후에 채권을 도산관재인에게 통지한 자
2. 최후배당에 있어서 최후기일의 종료후에 채권을 도산관재인에게 통지한 자
3. 추가배당에 있어서 공고 이후에 채권을 도산관재인에게 통지한 자

第3章 倒産節次の廢止

제207조 (재단부족으로 인한 폐지) ①도산절차개시후에 도산재단이 도산절차비용을 지급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산법원은 도산절차를 폐지한다. 단, 충분한 금액을 선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도산법원은 폐지전에 채권자집회, 도산관재인 및 도산채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재단에 현금이 존재하는 한 도산관재인은 폐지전에 절차비용을 그 금액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산관재인은 더 이상 재단목적물을 환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08조 (재단부족의 통지) ①절차비용은 지급되지만 도산재단이 만기가 도래한 그밖의 도산채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도산관재인은 도산법원에 재단부족을 통지하여야 한다. 재단이 만기에 그밖의 도산채무를 이행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같다.

②도산법원은 재단부족의 통지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특히 재단채권자에게는 재단부족의 통지사실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재단부족의 통지후에도 도산관재인의 재단관리의무 및 환가의무는 계속된다.

제209조 (재단채권자에 대한 변제) ①도산관재인은 재단채무를 다음의 순서에 따라 변제한다. 동순위의 채권은 그 금액에 비례하여 변제한다.

1. 도산절차비용
2. 재단부족의 통지후에 성립한 것으로 절차비용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 그 밖의 재단채무. 이 중 제100조 및 제101조제1항제3문의 규정에 의한 부양료는 최후의 순위로 한다.

②제1항제2호의 재단채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도산관재인이 재단부족의 통지후 변제를 허용한 쌍무계약상의 채무
2. 도산관재인이 재단부족의 통지후 해지할 수 있었던 최초의 기간 이후의 계속적 채권관계로 인한 채무
3. 도산관재인이 재단부족의 통지후 도산재단을 위하여 반대급부를 청구한 계속적 채권관계로 인한 채무

제210조 (강제집행금지) 도산관재인이 재단부족을 통지한 후에는 제20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단채무로 인한 강제집행은 금지된다.

제211조 (재단부족의 통지후의 폐지) ①도산법원은 도산관재인이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재단으로부터 변제한 후 즉시 도산법원은 도산절차를 폐지한다.

②도산관재인은 재단부족의 통지후 특히 자신의 직무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③도산절차폐지후 재단의 목적물이 발견된 경우에는 도산법원은 도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추가배당을 명한다. 이 경우 제203조제3항, 제204조 및 제2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2조 (도산절차개시원인의 소멸로 인한 폐지) 도산절차를 폐지하더라도 채무자의 지급불능, 급박한 지급불능의 우려 또는 도산절차개시원인이 채무초과인 경우 채무초과가 없을 것이 보증되는 때에는, 도산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도산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신청을 함에 있어 도산절차개시원인의 소멸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213조 (채권자의 동의에 의한 폐지) ①도산절차는 채권신고기간 이후에 채무자가 채권을 신고한 모든 채권자의 동의를 얻고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폐지할 수 있다. 채무자 또는 도산관재인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채권자 및 별채권자의 동의를 요하도록 할 것인가의 여부 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인가의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한다.

②동의하지 아니하는 채권자가 없는 경우 도산절차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권신고기간의 경과전에도 폐지할 수 있다.

제214조 (폐지절차) ①제212조 또는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절차폐지의 신청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폐지의 신청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동의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첨부되어야 한다. 도산채권자는 공고후 1주내에 서면 또는 조서작성에 의하여 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도산법원은 신청권자, 도산관재인 및 채권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위원회를 심문한 후 폐지여부를 결정한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도산관재인은 폐지전에 이의없는 도산채권에 대하여 변제하고 이의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5조 (공고와 폐지의 효력) ①제207조, 제211조, 제212조 또는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절차의 폐지결정과 폐지의 이유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채무자, 도산관재인 및 채권자위원회의 위원에게는 폐지의 효력발생시기(제9조제1항제3문)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00조제2항제2문 및 제3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채무자는 폐지의 결정으로 도산재단에 속하였던 권리를 회복한다. 이 경우 제201조 및 제20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6조 (불복) ①제207조, 제212조 또는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절차의 폐지에 대하여는 모든 도산채권자가, 제207조의 규정에 의한 폐지시에는 채무자가 즉시 항고할 수 있다.

②채무자는 제212조 또는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즉시항고

할 수 있다.

第6編 倒産計劃

第1章 倒産計劃의 作成

제217조 (기본원칙) 도산계획에서는 별채권자와 도산채권자에 대한 변제, 도산재단의 환가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배당 및 도산절차종료후의 채무자의 책임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들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18조 (도산계획의 제출) ①도산관재인 및 채무자는 도산법원에 도산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채무자는 도산절차개시의 신청과 함께 도산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최후기간이후 법원에 제출된 도산계획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②채권자집회가 도산관재인에게 도산계획의 완성을 위임한 경우 도산관재인은 적절한 기간내에 그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산관재인이 도산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채권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동위원회, 경영협의회, 주요근로자대표위원회 및 채무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19조 (도산계획의 구성) 도산계획은 설명부(darstellender Teil)와 형성부(gestaltender Teil)로 구성된다. 도산계획에는 제229조 및 제230조의 규정에 명시된 부가사항(Anlage)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220조 (설명부) ①설명부에서는 이해관계인의 권리형성의 원칙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산절차개시까지 취할 조치 및 도산절차개시후 취할 조치를 기술한다.

②설명부에는 채권자가 계획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이 계획을 인가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도산계획의 원칙 및 효력에 관한 부가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21조 (형성부) 형성부에서는 계획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법적 지위를 변경시키는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제222조 (집단의 구분) ①서로 상이한 법적 지위를 가진 채권자가 관계되는 경우에는 도산계획에서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정함에 있어 집단을 구분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 1의 채권자는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

1. 도산계획에 의하여 권리가 침해되는 별채권자
2. 후순위가 아닌 도산채권자
3. 후순위 도산채권자의 각 등급. 단, 제2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채권이 면책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진 채권자는 동일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에 포함

시켜야 한다. 집단은 각각 구분되어야 하고 그 기준이 도산계획에 제시되어야 한다.

③근로자가 상당한 채권을 가지고 도산채권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집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소액채권자에 대하여도 별도의 집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223조 (별채권) ①도산계획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별채권자가 별제목적물로부터 변제받을 권리는 도산계획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도산계획에 이 법과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형성부에서 별채권자에 대하여 배당률의 삭감정도, 지급유예기간 또는 기타의 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제224조 (도산채권자의 권리) 도산계획의 형성부에서는 후순위가 아닌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률의 삭감정도, 지급유예기간, 권리보전방법 또는 기타의 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제225조 (후순위 도산채권자의 권리) ①후순위 도산채권자의 채권은 도산계획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면책된 것으로 본다.

②도산계획에 이 법과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형성부에서 후순위 도산채권자의 각 집단에 대하여 제224조의 규정에서 명시한 부가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도산절차 종료후의 채무자의 벌금 및 이와 동일시되는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에 대한 책임은 도산계획에 의하여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제226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동등한 취급) ①각 집단의 모든 채권자는 동등한 취급을 받는다.

②특정집단의 채권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은 모든 관련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경우 모든 관련채권자의 동意的 의사표시가 도산계획에 첨부되어야 한다.

③도산관재인·채무자 또는 기타의 자와 개별채권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집단내의 투표를 통하여 또는 도산절차와 관련하여, 개별채권자에게 도산계획에 정함이 없는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는 경우 그 약정은 무효이다.

제227조 (채무자의 책임) ①도산계획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형성부에서 정한 대로 도산채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밖의 채무로부터 면책된다.

②제1항은 채무자가 법인격없는 회사이거나 주식합자회사인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228조 (물권관계의 변동) 목적물상의 권리를 성립, 변경, 양도 또는 포기하는 의사표시는 도산계획의 형성부에서 정하여질 수 있다. 토지등기부상의 토지 또는 등기된 권리에 관한 사항이 문제되는 경우, 이들 권리는 토지등기법 제28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명시되어야 한다. 선박등기부, 건조중인 선박의 등기부 또는 항공기저당등기부상의 권리에 대하여도 제2문을 적용한다.

제229조 (재산의 개요 및 수익·재정계획) 채권자가 채무자 기타 제3자의 계속기업

으로부터 변제받는 경우, 도산계획에 재산 및 도산계획의 효력발생시에 직면하게 되는 채무의 가액이 제시되는 재산개요를 첨부하여야 한다.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기간동안 예상되는 지출·수익의 정도 및 그 기간동안 기업의 지급능력을 보증하는 수입과 지출의 연속정도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30조 (기타의 표시사항) ①도산계획에서 채무자의 기업의 속행을 정하고 있고 채무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도산계획에 의거하여 기업을 속행할 것이라는 채무자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한다. 채무자가 법인격없는 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인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1문의 채무자의 의사표시는 채무자가 도산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②채권자가 법인 또는 법인격없는 사단이나 법인격없는 회사의 지분, 사원권 또는 출자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의 의사가 도산계획에 표시되어야 한다.

③제3자가 도산계획의 인가를 위하여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의사표시가 도산계획에 표시되어야 한다.

제231조 (도산계획의 거부) ①도산법원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직권으로 도산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한다.

1. 도산계획의 제안권 및 내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계획제출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거나 치유하지 아니한 경우
2. 채무자가 도산계획을 제출함에 있어 채권자의 승인 또는 법원의 인가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3. 채무자가 제출한 도산계획의 형성부에서 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인정된 청구권의 실현이 명백하게 불가능한 경우

②채권자의 승인 또는 법원의 인가가 없거나 협의기간의 공고후 철회한 도산계획을 채무자가 도산절차의 진행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도산관재인은 채권자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도산법원에 거부를 신청할 수 있다. 도산법원은 도산관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새로운 도산계획을 거부하여야 한다.

③도산계획의 거부결정에 대하여는 제출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232조 (도산계획에 대한 의견표명) ①도산법원은 도산계획이 거부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의견표명을 위하여 그 도산계획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채권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동위원회, 경영협의회 및 주요근로자대표위원회
2. 도산관재인이 제출한 경우 채무자
3. 채무자가 제출한 경우 도산관재인

②도산법원은 산업, 상업, 수공업, 농업 기타 전문분야에서 채무자에게 소속된 직무상대리인에 대하여도 의견표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도산법원은 의견표명을 위한 기간을 정한다.

제233조 (환가 및 배당의 중지) 도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의 속행으로 인하여 도산계획의 수행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산법원은 채무자 또는 도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환가 및 배당의 중지를 명한다. 중지로 인하여 도산재단에 중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거나 도산관재인이 채권자위원회 또는 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 환가 및 배당의 속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도산법원은 중지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취소한다.

제234조 (도산계획의 비치) 도산계획은 그 부가사항 및 도산계획에 대한 의견표명과 함께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第2章 倒産計劃에 대한 同意 및 認可

제235조 (협의 및 투표기간) ①도산법원은 도산계획과 채권자의 의결권에 관한 협의 기관과 후속계획에 관한 투표기간(협의 및 투표기간)을 정한다. 그 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협의 및 투표기간은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시에는 도산계획과 이해관계인의 의견표명의 내용을 법원에서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채권을 신고한 도산채권자, 별채권자, 도산관재인, 채무자, 경영협의회 및 주요근로자 대표위원회에 대하여는 별도로 송달하여야 한다. 송달시에는 도산계획의 사본 또는 도산계획제출자가 요청에 의하여 제출한 계획의 주요내용에 관한 요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36조 (채권조사기간과의 합병) 협의 및 투표기간은 채권조사기간보다 선행할 수 없다. 단, 양기간은 병합이 가능하다.

제237조 (도산채권자의 의결권) ①도산계획의 투표에 관한 도산채권자의 의결권에 대하여는 제77조제1항제1문, 제2항 및 제3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채권자는 채무자가 인적 채무도 동시에 부담하고 있고 별채권에 의한 변제를 포기하거나 결손이 있는 경우에만 의결권이 있다. 이 경우 결손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되는 결손으로 고려한다.

②도산계획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채권자는 의결권이 없다.

제238조 (별채권자의 의결권) ①도산계획에서 별채권자의 법적 지위를 정하는 경우 제23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각 별채권자의 권리가 협의되어야 한다. 도산관재인, 다른 별채권자 또는 도산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는 별채권은 의결권을 가진다. 이의가 제기된 채권,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기한미도래채권의 의결권에 대하여는 제41조, 제77조제2항 및 제3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 경우 제23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9조 (의결권목록) 법원은 제23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내의 협의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의결권을 표로 작성한다.

제240조 (도산계획의 변경) 도산계획의 제출자는 제23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내의 협의에 근거하여 도산계획의 개별규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도산계획에 대하여는 동기간내에 투표할 수 있다.

제241조 (별도의 투표기간) ①도산법원은 도산계획의 투표에 관한 별도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기간과 투표기간간에는 1월이하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②의결권있는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투표기간을 송달하여야 한다. 도산계획의 변경시에는 특히 그 변경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42조 (서면투표) ①별도의 투표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의결권은 서면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②도산법원은 협의기간후 의결권있는 채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고 동시에 의결권이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는 투표기간전일까지 도달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투표용지의 발송시 이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43조 (집단별 투표) 의결권있는 채권자의 각 집단은 도산계획에 관하여 별도로 투표할 수 있다.

제244조 (과반수요건) ①도산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채권자에 의하여 각 집단별로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투표에 참가한 채권자의 과반수의 동의
2. 동의한 채권자의 채권총액이 투표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권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②채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수개의 채권이 도산절차개시의 효력발생시까지 1개의 채권으로 된 채권자는 1인의 채권자로 계산한다. 담보물권이나 용익물권이 존재하는 채권도 동일하다.

제245조 (의사진행방해의 금지) ①도산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과반수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때에는 투표집단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본다.

1. 당해 투표집단의 채권자가 도산계획에 의하는 것이 동계획이 없는 경우보다 불리한 지위에 처하지 아니할 것
2. 당해 투표집단의 채권자가 도산계획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부여되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이 있을 것
3. 투표집단의 과반수가 각각 과반수요건을 충족하였을 것

②도산계획에 의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사실이 존재하는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당해 투표집단의 채권총액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가진 다른 채권자가 존재

하지 아니할 것

- 2. 도산계획이 없다면 제1항제2호의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변제받을 채권자,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이해관계인이 도산계획에 의하여 경제적 이익을 갖지 아니할 것
- 3. 도산계획이 없다면 제1항제2호의 채권자와 동순위로 변제받을 채권자 중 누구도 도산계획에 의하여 제1항제2호의 채권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놓이지 아니할 것

제246조 (후순위도산채권자의 동의) 후순위 도산채권자에 의한 도산계획의 승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 1.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순위의 채권자집단에 있어서 동제1호 및 제2호의 이자채권 또는 비용채권이 도산계획에서 면제되거나 제2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경우 및 이미 도산채권자의 기본채권이 도산계획에 의하여 일부 변제된 경우에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2.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순위의 채권자집단에 있어서 도산계획에 의하여 이 집단의 채권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놓이는 도산채권자가 없는 경우 도산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3. 어느 집단의 채권자가 아무도 투표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제247조 (채무자의 동의) ①채무자가 투표기간내에 서면 또는 법원의 조서에 의하여 도산계획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동의는 있는 것으로 본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이의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 1. 채무자가 도산계획이 없는 경우보다 도산계획에 의하여 불리한 지위에 처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어떤 채권자도 자신의 청구권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제248조 (법원의 인가) ①제244조 내지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의 승인 및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후 도산법원에 의한 동계획의 인가를 요한다.

②도산법원은 인가결정전에 도산관재인, 채권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위원회 및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249조 (조건부도산계획) 도산계획에서 법원의 인가전에 일정한 급부의 제공 또는 기타의 조치의 실현을 조건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들 조건이 충족된 때에만 도산계획이 인가될 수 있다. 조건이 법원이 정한 시기를 경과한 후에도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도산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한다.

제250조 (절차규정의 위반) 다음 각호의 1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산계획은 인가되지 아니한다.

- 1. 도산계획의 내용과 절차상의 취급에 관한 규정 및 채권자의 승인과 채무자의 동의에 관한 규정이 실질적으로 준수되지 아니하고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경우

2. 도산계획의 승인이 부정한 경우. 특히 특정채권자를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한 경우 제251조 (소수자보호) ①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도산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한 채권자가 투표기간내에 서면 또는 법원의 조서에 의하여 도산계획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것
2. 신청채권자가 도산계획에 의하여 도산계획이 없는 경우보다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된 경우
 - ②채권자가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도산계획에 의하여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되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252조 (도산계획인가의 공고) ①도산계획을 인가하거나 인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투표기간내 또는 그 기간 이후의 특별기간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도산계획이 인가된 경우에는 채권을 신고한 채권자 및 별채권자에게 인가사실을 고지하면서 동계획의 사본 또는 중요내용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253조 (불복) 채권자 및 채무자는 도산계획의 인가결정 또는 불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第3章 認可된 倒産計劃의 效力. 計劃遂行에 대한 監督

제254조 (일반적 효력) ①도산계획의 형성부에 규정된 효력은 도산계획인가의 확정력에 의하여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미친다. 목적물상의 권리가 성립, 변경, 이전 또는 포기되거나 유한회사의 지분이 포기된 경우 도산계획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의 의사표시는 서면형식을 취한 것으로 본다. 도산계획에 기재된 목적물상의 권리의 성립, 변경, 이전, 포기 또는 지분양도의 기초가 되는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도 동일하다. 제1문, 제2문 및 제3문은 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도산채권자 및 도산계획에 이의를 제기한 이해관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도산채권자의 공동채무자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 및 도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목적물에 대한 권리 또는 그 목적물에 대한 가등기에 기인하는 권리는 도산계획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공동채무자, 보증인 및 기타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도산채권자에 대한 것과 동일하게 면책된다.

③채권자가 도산계획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변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제255조 (부활조항) ①도산계획의 형성부에 근거하여 도산채권자의 채권이 지급유예되거나 일부면제되는 경우, 채무자가 도산계획을 수행함에 있어 현저하게 이행을 지체하는 때에는 그 유예나 면제는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채권자가 서면에 의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2주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지체가 된다.

②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도산계획의 수행이 완결되기 전에 새로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지급유예나 면제는 모든 도산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도산계획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다른 정함을 둘 수 있다. 단, 채무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제1항과 다르게 정할 수 없다.

제256조 (의의가 제기된 채권, 결손채권) ①채권조사기간내에 의의가 제기된 채권 및 별채권자의 결손금의 최고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들의 최고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도산계획에 대한 투표에 있어서의 채권자의 의결권에 관한 도산법원의 결정에 상응하는 정도로 동채권을 고려하였다면 제25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행지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채권자의 의결권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가 임시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결손금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채무자가 결손금을 과소하게 지급하였다는 것이 최종확정되면 채무자는 부족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서면으로 최고하고 2주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부족분을 추후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지체가 된다.

③채무자가 결손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는 것이 최종확정되면 채무자는 초과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그 초과지급액이 도산계획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기한미도래채권의 채권액도 초과한 경우에 한한다.

제257조 (도산계획에 의한 집행) ①확정되고 채권조사기간내에 채무자로부터 의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채권의 채권자는 채권표상의 기재와 함께 확정력있는 인가를 받은 도산계획에 의하여 강제집행력있는 판결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제기된 의의가 제기된 채권은 의의없는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 경우 제20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3자가 이전의 소송에 대한 항변을 유보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함께 도산계획을 수행한다는 의사를 서면에 의하여 법원에 표시함으로써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도 같다.

③채권자가 도산계획의 수행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때에 인정되는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 권리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받고 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자신이 최고한 사실 및 유예기간의 경과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행지체에 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

제258조 (도산절차의 종결) ①도산법원은 도산계획의 인가가 확정력을 갖는 즉시 도산절차의 종결을 결정한다.

②도산관재인은 종결전에 의의없는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의의있는 재단채권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도산절차종결의 사실 및 그 원인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채무자, 도산관재인 및 채권자위원회에 대하여는 미리 종결의 효력발생시기(제9조제1항제3문)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00조제2항제2문 및 제3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9조 (도산절차종결의 효력) ①도산관재인 및 채권자위원회 위원의 직무는 도산절차의 종결과 함께 종료한다. 채무자는 도산재단의 처분에 맡겨졌던 권리를 반환받는다.

②도산계획수행의 감독에 관한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도산관재인은 도산계획의 형성부에 정함이 있는 경우, 도산의 취소를 목적으로 계속 중인 소송을 도산절차의 종결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산계획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소송은 채무자의 계산으로 수행한다.

제260조 (도산계획수행의 감독) ①도산계획의 형성부에서 도산계획의 수행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도산절차종결후 형성부에 의거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권의 이행여부를 감독한다.

③도산계획의 형성부에 정함이 있는 경우, 도산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독은 도산계획의 형성부에 의거하여 도산절차개시후 채무자의 기업 또는 사업을 인수하거나 속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법인격없는 회사(인수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경우 그 채권의 이행여부에도 미친다.

제261조 (도산관재인의 의무 및 권한) ①도산관재인은 도산계획의 이행여부를 감독한다.

도산관재인과 채권자위원회 위원의 직무 및 법원의 감독권은 그 범위내에서 존속한다. 이 경우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도산관재인은 감독기간동안 채권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동위원회와 도산법원에 대하여 도산계획의 이행상황 및 기타의 전망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채권자위원회 및 도산법원은 언제든지 개별정보 및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62조 (도산관재인의 통지의무) 도산관재인은 채권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이행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채권자위원회 및 도산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위원회 대신에 도산계획의 형성부에 의거하여 채무자나 인수기업에 대하여 청구권을 가진 모든 채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3조 (도산관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 채무자 또는 인수기업의 특정한 법률행위는 감독기간동안 도산관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것을 도산계획의 형성부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4조 (신용의 범위) ①도산계획의 형성부에서는 채무자 또는 인수기업이 감독기간

동안 차용하거나 재단채권자가 감독기간내에 재단으로의 유입을 허락한 소비대차 또는 기타의 신용에 의한 도산채권자의 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의 총액이 확정되어야 한다(신용범위). 그 총액은 제229조제1문의 규정에서 정하는 도산계획개요에 기재된 재단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후순위채권자와 신용범위내에서 기본채권, 이자 및 비용에 상응하여 허락한 신용의 최고액에 대하여 합의하고 그 합의에 대하여 도산관재인이 문서로 승인한 경우의 채권자는 제1항의 후순위채권자에 우선한다.

③이 경우 제39조제1항제5문의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65조 (신채권자의 후순위) 감독기간동안 성립한 기타 계약상의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는 제26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신용에 의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보다 후순위이다. 감독기간전에 성립한 계약상의 계속적 채권관계에 의한 청구권으로서 채권자가 감독기간후에 해지할 수 있었던 최초의 기일후의 청구권은 제1문의 감독기간동안 성립한 청구권으로 본다.

제266조 (후순위에 대한 고려) ①도산채권자와 제26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채권자의 후순위는 감독종결전에 개시된 도산절차에 있어서만 고려된다.

②새로운 도산절차에 있어서 제1항의 채권자는 나머지 후순위채권자보다 우선한다.

제267조 (감독의 공고) ①도산계획수행의 감독은 도산절차의 종결결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260조제3항의 규정의 경우 인수기업에 대한 감독의 확장
2. 제263조의 규정의 경우 도산관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의 종류
3. 제264조의 규정의 경우 신용범위의 최고액

③이 경우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3조의 규정의 경우 부동산·등기된 선박·건조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처분권, 이들 목적물에 관한 권리 또는 동권에 관한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8조 (감독의 종결) ①도산법원은 다음 각호의 1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의 종결을 결정한다.

1. 이행여부가 감독의 대상인 청구권이 이행되거나 동청구권의 이행을 위하여 담보가 제공된 경우
2. 도산절차종결후 3년이 경과되고 새로운 도산절차개시의 신청이 없는 경우

②제1항의 법원의 결정은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6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9조 (감독비용) 도산계획수행여부에 대한 감독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260

조제3항의 규정의 경우에는 인수기업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第7編 自己管理

제270조 (요건) ①도산법원이 도산절차의 개시를 결정함에 있어 자기관리를 명한 경우 채무자는 도산절차수행감독인(이하 '감독인'이라 한다)의 감독하에 도산채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다.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7편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일반 규정을 적용한다.

②도산법원의 명령의 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채무자의 신청이 있을 것
2. 채권자가 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함에 있어 채무자의 신청에 동의하였을 것
3.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명령이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채권자를 불리하게 하지 아니할 것

③제1항의 경우 도산관재인에 대신하여 감독인을 선임한다. 도산채권자는 채권을 감독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71조 (추후명령) 도산법원이 채무자의 자기관리신청을 기각한 경우라도 최초의 채권자집회가 자기관리를 제안한 때에는 도산법원은 자기관리를 명한다. 이 경우 그 때까지의 도산관재인이 감독인으로 된다.

제272조 (법원의 명령의 종결) ①도산법원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자기관리명령을 종결한다.

1. 채권자집회가 신청한 경우
2. 별채권자 또는 도산채권자가 신청하고 제27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이 소멸한 경우
3.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②채권자는 제27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이 소멸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만 자기관리명령의 종결을 신청할 수 있다. 도산법원은 동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채권자 및 채무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③이 경우 그 때까지의 감독인을 도산관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273조 (공고) 도산절차개시의 결정후 자기관리명령의 결정 또는 명령종결의 결정은 공고하여야 한다.

제274조 (감독인의 법적 지위) ①감독인의 선임, 감독인에 대한 법원의 감독, 감독인의 보수 및 책임에 대하여는 제54조제2호, 제56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감독인은 채무자의 재정상태를 조사하고 영업 및 생계지출을 감독한다. 이 경우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감독인은 자기관리의 속행이 채권자에게 해가 된다고 예상되는 상황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채권자위원회 및 도산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채권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을 신고한 채권자 및 별채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5조 (감독인의 협력) ①통상의 업무수행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부담은 감독인의 동의를 있어야만 가능하다. 통상의 업무수행에 해당하는 채무부담도 감독인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②감독인은 채무자에게 모든 금전을 자신만이 수령하고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6조 (채권자위원회의 협력) 채무자가 도산절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법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채권자위원회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1항제2문, 제161조제2문 및 제1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7조 (동의필요성의 명령) ①도산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의 일정한 법률행위는 감독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것을 명한다. 이 경우 제81조제1항제2문, 제3문 및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법원의 명령은 채권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절박하게 필요한 경우 개별별채권자 또는 개별도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단, 별채권자 또는 도산채권자가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명령의 요건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동산, 등기된 선박, 건조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도 준용한다.

제278조 (채무자의 생계비) ①채무자는 자신 및 제100조제2항제2문에 열거된 가족을 위하여 기존의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필수적인 생계비를 도산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②채무자가 자연인이 아닌 경우 제1항은 채무자의 대표권있는 무한책임사원에게 준용한다.

제279조 (쌍무계약) 법률행위의 이행 및 경영협회의 동의·협력에 관한 규정(제103조 내지 제128조)은 채무자가 도산관재인을 대신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채무자는 동규정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신의 권리를 감독인과 협의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제280조 (책임의 추궁 및 부인권) 제92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재단에 대한 책임은 감독인만이 이를 주장할 수 있고, 감독인은 제129조 내지 제147조의 규

정에 의하여 법적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281조 (채권자에 대한 보고) ①채무자는 재단목적물표, 채권자표 및 재산개요(제151조 내지 제153조)를 작성하여야 한다. 감독인은 이들 표 및 재산개요를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보고기간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인은 보고시 입장을 표명하여야 한다.

③채무자는 제66조 및 제15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계산을 할 의무가 있다. 최후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1항제2문을 적용한다.

제282조 (담보목적물의 환가) ①별채권이 존재하는 목적물에 대한 도산관재인인의 환가권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목적물 및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비용은 증액되지 아니한다. 환가의 실제소요비용 및 양도소득세만이 환가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②채무자는 감독인과 협의하여 환가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283조 (도산채권자에 대한 변제) ①채권조사시에 채무자 및 감독인은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도산채권자, 채무자 및 감독인이 이의를 제기한 채권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배당은 채무자가 이를 행한다. 감독인은 배당표를 조사하고 그 때 그 때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제기 여부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84조 (도산계획) ①채권자집회는 감독인 또는 채무자에게 도산계획의 작성을 위임할 수 있다. 채무자가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감독인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도산계획이행의 감독은 감독인이 이를 행한다.

제285조 (재단부족) 감독인은 재단부족사실을 도산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第8編 殘餘債務免責

제286조 (원칙) 채무자가 자연인인 경우 도산절차에서 이행되지 아니한 도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제287조 내지 제3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된다.

제287조 (채무자의 신청) ①잔여채무면책을 위하여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늦어도 보고기간내에 서면으로 도산법원에 도달되거나 법원의 조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신청은 도산절차개시의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②잔여채무면책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도산절차종결후 7년의 고용관계로 인한 수입 또는 다른 지위에서의 계속수입에 관한 압류가능한 채권을 법원이 정한 수탁자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채무자가 제1문의 채권을 이미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그것이 압류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의사표시에 언급되어야 한다.

③고용관계로 인한 수입 또는 다른 지위에서의 계속수입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거나 조건에 의하여 구속 특히 제한하는 약정은 제2항제1문에 의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한 무효이다.

제288조 (제안권) 채무자와 채권자는 도산법원에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적합한 자연인을 수탁자로 제안할 수 있다.

제289조 (도산법원의 결정) ①도산법원은 최후기일에 채무자의 신청에 관하여 도산채권자 및 도산관재인을 심문할 수 있다.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으로써 판결한다.

②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 및 최후기간중에 잔여채무면책불허를 신청한 모든 도산채권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 도산절차는 법원의 결정이 확정력을 발한 후에 비로소 종결된다. 법원의 확정력있는 결정은 도산절차종결결정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도산절차폐지의 경우에는 재단부족사실의 신고후 도산재단이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되고 도산절차폐지가 제211조의 규정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만 잔여채무면책이 허용될 수 있다. 도산절차폐지가 도산절차종결로 진행되는 경우 제2항을 적용한다.

제290조 (잔여채무면책의 기각) ①최후기간중 도산채권자에 의한 신청이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잔여채무면책은 결정으로 기각된다.

1. 채무자가 형법 제283조 내지 제283조c에 의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때
2. 채무자가 도산절차개시의 신청전 3년내에 또는 신청후에 신용을 얻거나 공공채산 또는 공공조합으로부터 급부를 받을 목적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재정상태를 부적절 또는 불충분하게 신고한 경우
3. 도산절차개시의 신청전 10년내에 또는 신청후에 채무자에 대한 면책이 있거나 제296조 또는 제2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이 기각된 경우
4. 채무자가 도산절차개시의 신청 바로 전해에 또는 신청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당하게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을 낭비하거나 재정상태의 개선의 전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산절차개시를 지체함으로써 도산채권자의 만족을 해한 경우
5. 채무자가 도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 법에 의한 통지의무 또는 협력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채무자가 제30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을 요하는 채무자의 재산·수입에 관한 표, 채권자표 및 채권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의 또는 불충분한 기재를 한 경우

②제1항의 채권자의 신청은 잔여채무면책기각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291조 (잔여채무면책의 발표) ①제29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

하고, 채무자가 제29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의무를 준수하며, 제297조 또는 제29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잔여채무면책의 기각요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산법원은 잔여채무면책을 결정으로서 확정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제28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압류가능한 채무자의 수입을 이전받을 수탁자를 정한다.

제292조 (수탁자의 법적 지위) ①수탁자는 채무자에게 수입을 지급할 의무있는 자에 대하여 수입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채무자가 양도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 및 채무자 또는 제3자의 기타의 급부를 자신의 재산과 분리하여 보유하고, 년 1회 최후표에 근거하여 이를 도산채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양도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 및 기타의 급부 중 일정비율 즉, 도산절차종결후 4년이 경과한 때에는 10%, 5년이 경과한 때에는 15% 및 6년이 경과한 때에는 20%를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채권자집회는 수탁자에게 채무자의 의무이행을 감독할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채무자의 의무위반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감독에 대한 추가보수가 있거나 보수가 미리 지급된 경우에만 감독의무를 부담한다.

③수탁자는 직무종료시 계산서를 도산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제59조의 규정은 모든 도산채권자에 의하여 해임이 신청될 수 있고 모든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준용한다.

제293조 (수탁자의 보수) ①수탁자는 직무에 관한 보수청구권 및 비용보상청구권을 가진다. 이 경우 수탁자의 직무의 시간 및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이 경우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4조 (채권자의 동등취급) ①개별채권자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양도의 의사표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채무자 또는 기타의 자와 개별채권자간에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이다.

③양도의 의사표시가 미치는 수입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그 수입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의무자는 도산절차의 계속 중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는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다.

제295조 (채무자의 의무) ①양도의 의사표시의 계속 중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의무를 부담한다.

1. 적절한 영리행위를 할 의무, 무직인 경우 취업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및 부당한 업무를 거절할 의무
2. 사망으로 인하여 또는 장래의 상속권을 고려하여 취득할 재산가액중 절반을 수

탁자에게 인도할 의무

3. 모든 주소 및 사무소의 변동을 지체없이 도산법원 및 수탁자에게 신고할 의무, 양도의사표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과 제2호의 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재산을 은닉하지 아니할 의무 및 요구에 의하여 법원 및 수탁자에게 자신의 영리행위 또는 이를 위한 노력 및 수입·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4. 도산채권자에 대한 지급을 수탁자를 통하여만 이행할 의무 및 도산채권자 중 누구에게도 특별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할 의무
- ②채무자가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고용관계의 경우와 동일하게 수탁자에 대한 지급을 통하여만 채권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

제296조 (채무자의 의무위반) ①도산법원은 채무자가 양도의사표시의 계속 중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도산채권자의 만족을 해한 경우에는 도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잔여채무면책을 기각한다. 단,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채권자는 신청을 함에 있어 제1문 및 제2문의 내용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결정전에 수탁자, 채무자 및 신청채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자신의 의무이행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통지의 진실성을 선서에 대신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통지 또는 선서에 대신하는 보증을 타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적법절차에 의한 소환에도 불구하고 통지 또는 선서에 대신하는 보증을 위한 기간내에 법원에 출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잔여채무면책은 기각된다.

③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채권자 및 채무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 잔여채무면책의 기각사실은 공고하여야 한다.

제297조 (도산범죄) ①채무자가 최후기간과 도산절차종결간의 기간 또는 양도의사표시의 계속 중 형법 제283조 내지 제283조c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도산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잔여채무면책을 기각한다.

②이 경우 제296조제1항제3문 및 제4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8조 (수탁자의 최저보수의 지급) ①수탁자의 전년도 직무에 대하여 지급된 보수가 최저보수에 미치지 아니하고, 수탁자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부족액을 2주이상의 기간내에 지급할 것을 최고함과 동시에 잔여채무면책의 기각가능성을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부족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도산법원은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잔여채무면책을 기각한다.

②법원은 결정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제1항의 수탁자의 최고후 2주내에 법원에 부족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잔여채무면책은 기각되지 아니한다.

③이 경우 제29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9조 (조기종료) 제296조, 제297조 또는 제2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채무면책이 기각되는 경우, 양도의사표시의 존속기간·수탁자의 직무 및 채권자의 권리제한은 결정의 확정력에 의하여 종료한다.

제300조 (잔여채무면책의 결정) ①제29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기종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의사표시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원은 도산채권자, 수탁자 및 채무자를 심문한 후 결정으로 잔여채무면책을 선고한다.

②제296조제1항제1문, 제2문 또는 제29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거나 수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29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법원은 도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잔여채무면책을 기각한다.

③법원은 결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잔여채무면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취하여 연방관보에 게재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 및 제1항에 의한 심문시 잔여채무면책의 기각을 신청한 채권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301조 (잔여채무면책의 효력) ①잔여채무면책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모든 도산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도 같다.

②도산채권자의 공동채무자 및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 담보목적으로 등기된 가등기 또는 도산절차상의 별제권에 의한 권리는 잔여채무면책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공동채무자, 보증인 또는 기타의 상환청구권자에 대하여는 도산채권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된다.

③채권자가 잔여채무면책에 의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받은 경우 채권자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제302조 (예외적인 채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잔여채무면책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 채무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

2. 벌금 및 이와 동일시 되는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

제303조 (잔여채무면책의 철회) ①추후에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도산채권자의 만족을 상당한 정도로 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법원은 도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잔여채무면책의 결정을 철회한다.

②채권자의 신청은, 잔여채무면책의 결정이 확정력을 발생한 후 1년내에 있고,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고 채권자가 결정의 확정력이 발생한 때까지 요건충족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소명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③법원은 결정전에 채무자 및 수탁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권자 및 채무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 잔여채무면책을 철회하는 결정은 공고하여야 한다.

第9編 消費者倒産節次 및 기타의 小規模倒産節次

第1章 適用範圍

제304조 (원칙) ①경제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거나 경미한 독립적인 경제활동만을 영위하는 자연인이 채무자인 경우 도산절차에 관한 일반규정은 이 편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독립적인 경제활동은 그 종류와 범위에 비추어 볼 때 상인적인 방법으로 영업행위를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제1항의 의미상의 경미한 것이다.

第2章 債務의 調整

제305조 (채무자의 개시신청) ①채무자는 제3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절차개시의 신청과 함께 또는 신청후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1에 계기하는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적격인 자 또는 지위에 의하여 작성되고 도산절차개시의 신청전 6월내에 계획에 기초한 채무조정에 관한 채권자와의 재판외의 합의가 성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 주는 적격인 자 또는 지위를 정할 수 있다.
2. 제2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채무면책을 신청하거나 신청하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
3. 재산·수입에 관한 표(재산표), 채권자표 및 채권표. 이들 표에는 기재사항이 진실하고 완전하다는 의사표시가 첨부되어야 한다.
4. 채무조정계획. 이 계획에는 채권자의 이익 및 채무자의 재산·수입 및 가족관계를 고려하여 채무조정에 적절한 모든 규정의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이 계획에서는 채권자의 보증, 질권 및 기타의 담보가 동계획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가의 여부 및 영향의 정도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3문에 의한 채권표에는 첨부된 채권자가 작성한 채권이 참고될 수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최고가 있는 경우 채권표의 준비를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다. 특히 채권의 최고액과 채권을 원본, 이자 및 비용으로 분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최고에는 법원에 도산개시신청을 한 사실 또는 가까운 장래에 동신청을 할 것이라는 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채무자가 제1항에 열거된 의사표시와 증서등을 완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도산법원은 채무자에게 구비되지 아니한 서류등을 지체없이 보충할 것을 최고한다. 채무자가 1월내에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도산개시신청은 취하

된 것으로 본다.

제306조 (도산절차의 정지) ①도산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절차는 채무조정계획에 대한 결정시까지 정지된다. 이 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은 보전조치명령에 반하지 아니한다.

③채권자가 도산절차개시를 신청하는 경우 도산법원은 개시결정전에 채무자에게도 신청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1항은 채권자의 신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07조 (채권자에 대한 송달) ①도산법원은 채권자에게 재산표, 채권자표, 채권표 및 채무정리계획을 송달하고 동시에 1월의 불변기간내에 이들 표와 채무정리계획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것을 최고한다. 도산법원은 각 채권자에게 제308조제3항제2문의 규정에서 정하는 법적 효과를 언급함과 동시에 제1문의 기간내에 채권표에 기재된 자신의 채권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충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문에 의한 송달에는 제8조제1항제2문, 제3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1문의 1월의 불변기간내에 채권자의 의견표명이 법원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내용은 법원의 최고시에 언급되어야 한다.

③제1항제1문의 1월의 불변기간이 경과한 후, 채권자가 표명한 의견에 기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합의에 의한 채무조정을 위하여 중요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일정기간내에 채무정리계획을 변경 또는 보충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자의 변경 또는 보충의 사실은 채권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문, 제3문 및 2항을 적용한다.

제308조 (채무정리계획의 승인) ①채무정리계획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3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충된 경우, 동계획은 승인된 것으로 본다. 도산법원은 이를 결정으로서 확정한다. 채무정리계획은 민사소송법 제7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화해의 효력이 있다.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채무조정계획의 정본과 제1문의 법원의 결정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이 경우 도산절차개시 및 잔여채무면책의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채권이 채무자의 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추후 채무정리계획의 완성시에도 고려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채권자가 제3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송달한 채권표내의 자신의 채권에 관한 기재내용을 정해진 기간내에 보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이 그 기간 전에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권은 소멸한다.

제309조 (동의를 보충) ①채무정리계획에 대하여 지정된 채권자의 과반수이상인 동의

하고 동의채권자의 채권총액이 지정된 채권자 전원의 채권총액의 과반수이상인 경우, 도산법원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정리계획에 반대하는 채권자의 이의를 동의에 의하여 보충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나머지 채권자에 대하여 적절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할 것
2. 동채권자가 도산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절차의 수행 및 잔여채무면책의 경우보다 채무정리계획에 의하여 경제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처하는 경우. 이 경우 채무자의 수입, 재산 및 가족관계는 도산절차의 전체기간 중 제1문에 의한 신청시를 기준으로 한다.

②법원은 결정전에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는 제1항제2문에 의한 동의에 의하여 채권자의 이의를 보충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신청권자 및 동의에 의하여 이의가 보충되어지는 채권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③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채무자가 보고한 채권의 성립여부, 동채권의 채권액이 보고된 것보다 더 높거나 낮은가의 여부 및 동채권자가 나머지 채권자에 대하여 적절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제1항2문1호)의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초래하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의 동의는 보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310조 (비용)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정리계획과 관련하여 성립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第3章 小規模倒産節次

제311조 (개시신청절차의 계속) 채무정리계획에 대하여 제30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재판상의 동의에 의하여 보충되지 아니하는 이의가 제기된 경우 개시신청절차는 직권으로 속행된다.

제312조 (일반적인 절차의 간이화) ①도산절차를 개시함에 있어서는 제29조의 규정의 경우와는 달리 조사기간만을 정한다.

②채무자의 재산관계를 개관할 수 있고 채권자의 수 또는 채권의 최고액이 경미한 경우, 도산법원은 도산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으로 진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이 명령을 언제든지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이 경우 도산계획(제217조 내지 제269조) 및 자기관리(제270조 내지 제285조)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3조 (수탁자) ①도산관재인은 직무는 수탁자(제292조)가 이를 수행한다. 수탁자는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의 경우와는 달리 미리 도산절차개시시에 정하여진다. 이

경우 제56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29조 내지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적 행위의 취소에 관하여는 수탁자가 아니라 각 도산채권자가 권한을 가진다. 채권자가 부담한 비용은 급부로부터 우선적으로 보상되어야 한다. 채권자집회가 비용을 부담한 채권자에게 취소를 위임하는 경우, 그 채권자는 급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는 범위내에서 도산재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③수탁자에게는 질권 또는 기타의 별채권이 존재하는 목적물의 환가에 관한 권한이 없다. 환가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제314조 (간이배당) ①도산법원은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도산재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가를 금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도산채권자에게 배당할 재단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산재단의 환가는 특히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명령에 의하여 중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결정전에 도산채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채무자의 잔여채무면책신청(제289조 내지 제291조)에 대한 결정은 제1항제2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선고된다. 법원이 잔여채무면책의 기각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부여한 2주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 제1항제2문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도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잔여채무면책을 기각한다.

第10編 特別한 種類의 倒産節次

第1章 相續財産에 대한 倒産節次

제315조 (장소적 관할권) 상속재산의 도산절차에 관하여는 피상속인의 사망시 그의 보통재판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산법원이 장소적 관할권을 가진다. 피상속인의 독립적인경제활동의 중심이 다른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산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제316조 (도산절차개시의 허가) ①도산절차개시는 상속인이 상속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한 사실로 인하여 실격되지 아니한다.

②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도산절차개시는 상속재산의 분배후에도 가능하다.

③상속분에 대하여는 도산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제317조 (신청권자) ①각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유언집행인 및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신청이 상속인 전원에게 의하여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시원인을 소명하여

야 한다. 도산법원은 신청에 관여하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③유언집행인이 상속재산의 관리권을 가진 경우, 상속인이 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을 한 때에는 그 유언집행인을, 유언집행인이 신청을 한 때에는 상속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제318조 (합유재산에 있어서의 신청권) ①상속재산이 부부재산공동체의 합유재산에 속한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 및 상속인은 아니지만 단독으로 또는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합유재산을 관리하는 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타방배우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부부재산공동체가 종료하는 경우 배우자 쌍방이 신청권을 보유한다.

②신청이 배우자 쌍방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신청하지 아니한 타방배우자의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319조 (신청기간) 상속후 2년이 경과한 경우 상속채권자는 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없다.

제320조 (개시원인) 상속재산에 대한 도산 절차개시의 원인은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이다.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인이 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불능의 우려도 개시원인이 된다.

제321조 (상속개시후의 강제집행) 상속개시후의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조치에 있어서는 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22조 (취소할 수 있는 상속인의 법적 행위) 상속인이 도산절차개시전에 상속재산으로부터 유류분, 유증 또는 부담을 이행한 경우에는 무상행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제323조 (상속인의 비용) 민법 제1978조 및 제19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부터 상속인에게 보상되어야 하는 비용을 원인으로 하는 유치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24조 (재단채무) ①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열거된 채무 이외에 재단채무에 속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민법 제1978조 및 제19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부터 보상하여야 할 비용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피상속인의 사망선언의 경우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절차비용
4. 사망으로 인한 유언개시비용 및 상속재산의 재판상 보전절차비용, 상속재산관리비용, 상속재산채권자의 공시최고비용 및 재산목록작성비용
5.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인의 법률행위로 인한 채무
6.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인 및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채권자를 위하

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상속재산채권자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성립한 채무

②재단부족의 경우 제1항에 명시된 채무는 제20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순위를 가진다.

제325조 (상속재산채무) 상속재산에 대한 도산절차에 있어서는 상속재산채무만이 행사될 수 있다.

제326조 (상속인의 청구권) ①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자신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상속인이 상속재산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이 민법 제19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계산을 위하여 행한 것이 아닌 한, 상속인은 상속재단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의 지위에 놓인다.

③상속인이 개별채권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327조 (후순위채무) ①제39조의 규정에 명시된 채무에 의한 순위 및 다음 각호의 1의 순위에 의하고, 동순위는 금액에 비례하여 변제한다.

1. 유류분에 대한 채무
2. 피상속인이 지정한 유언 및 부담으로 인한 채무
3. 相續代償權者에 대한 채무

②민법 제23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유자의 유류분상의 권리를 배제하는 유증은 유류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유류분권과 동일한 순위를 가진다.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하여 어떤 유증 또는 부담을 다른 유증이나 부담보다 먼저 이행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그 유증 또는 부담은 우선권을 가진다.

③공시최고절차에서 배제되거나 민법 제19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제되는 채권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채권자의 채무는 그 채무가 제한없이 제39조의 규정에 명시된 채무와 동순위를 가진 경우 제39조의 채무의 후순위로 이행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제한에 의하여 순위가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328조 (반환되는 목적물) ①피상속인의 능동행위 또는 수동행위의 취소로 인하여 도산재단에 반환된 것은 제327조제1항의 규정에 명시된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②공시최고절차에서 배제되거나 민법 제19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제되는 채권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채권자는 상속인이 부당이득반환규정에 의하여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그 상속인에 대하여 민법 제1978조 내지 제19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재단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9조 (후순위상속이후) 제322조, 제324조제1항제1문 및 제32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후순위상속이 개시된 후 선순위상속인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제330조 (상속재산의 매매) ①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매도한 경우 도산절차에 관하여는 매수인이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상속인은 제1항에 의하여 매수인이 부담하는 상속재산채무에 대하여 상속재산채권자와 동일하게 도산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이 무한책임을 부담하거나 상속재산관리가 명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타의 상속재산채무에 대하여도 같다. 이 경우 제323조, 제324조제1항제1호 및 제326조의 규정은 상속재산매도이후에도 상속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은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을 매도하거나 자신에게 귀속 또는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양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31조 (상속인의 동시도산) ①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도산절차에 있어서 상속재산에 대한 도산절차가 개시되거나 상속재산관리가 명하여진 경우, 제52조, 제190조, 제192조, 제198조 및 제237조제1항제2문의 규정은 상속인이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상속재산채권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②제1항에서 언급한 규정들은 일방배우자가 상속인이고 상속재산이 타방배우자가 단독으로 관리하는 합유재산에 속하는 경우 타방당사자의 재산에 대한 도산절차에 적용되고, 합유재산이 배우자 쌍방에 의하여 공동으로 관리되는 경우 그 합유재산에 대한 도산절차 및 상속인이 아닌 일방배우자의 이전의 재산에 대한 도산절차에도 적용한다.

第2章 繼續的 財産共同制의 合有財産에 대한 倒産節次

제332조 (상속재산도산절차의 참조) ①계속적 재산공동제의 경우 제315조 내지 제331조의 규정은 합유재산에 대한 도산절차에 준용한다.

②계속적 재산공동제의 개시시에 이미 합유재산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채권자만이 도산채권자가 된다.

③지분권이 있는 자는 도산절차개시의 신청권이 없다.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산절차개시의 신청에 있어서 그를 심문할 수 있다.

第3章 財産共同制의 共同管理 合有財産에 대한 倒産節次

제333조 (신청권, 개시원인) ①재산공동제에 있어서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재산공동제의 합유재산에 대하여는 그 합유재산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자가 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②각 배우자도 신청권이 있다. 신청이 배우자 쌍방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유재산의 지급불능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산법원은 신청을 하지

아니한 타방배우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배우자 쌍방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불능의 우려도 개시원인이 된다.

제334조 (부부의 무한책임) ①합유재산으로부터의 이행이 청구될 수 있는 채무에 대한 부부의 무한책임은 도산절차의 진행중에는 도산관재인 또는 감독인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도산계획의 경우에는 제227조제1항의 규정을 부부의 무한책임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11編 施行

제335조 (시행법률에의 위임) 이 법은 도산법의 시행법률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구보고 98-1 獨逸의 倒産法

1998년 5월 25일 印刷

1998년 5월 30일 發行

發行人 徐 承 完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東 亞 商 社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화: (02)722-2901, FAX(02)722-2900

등록번호 : 1981.8.11. 제1-a0190호

값 6,500 원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금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89-8323-068-1 93360

